

사회책임투자를 위한 기업 정보공개

노희진 · 류영재 · 안수현
안승광 · 임대응 · 장영옥 · 황은경

한국증권연구원
Korea Securities Research Institute

序 言

많은 기관투자자들과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들이 사회책임투자의 당위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책임투자 투자대상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기업의 위험관리 정보가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후변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책임투자에서 심각하게 고려되었던 주제이자,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논의되고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2007년 12월 현재 사회책임투자에서 고려하고 있는 정보의 집합체인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한 국내기업은 총 32개사입니다. 2004년 일부 국내 대기업에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최초로 발간한 것을 감안할 때 상당한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그 양과 질 두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속가능성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정보공개 체제 구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틀이 갖춰질 때 비로소 자산운용사에서도 사회책임투자 그리고 ESG리서치 활동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자료집은 한국증권연구원이 주관하는 사회책임투자연구회에서 이미 발간한 “사회책임투자 개념 및 국제 동향”, “사회책임투자의 원칙과 적용”, “사회책임투자의 해외제도 검토 및 국내 발전방향”에 이어 2007년 5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진행한 연구결과와 주요 자료들을 중심으로 작성한 네 번째 자료집입니다. 이번 자료집에서는 “사회책임투자를 위한 기업 정보공개”라는 주제 하에 사회책임투자 정보공개 관련사항과 향후의 기업 정보공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책임투자 연구회에서는 사회책임투자에 관한 제반 사항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

임에 관한 연구를 향후 체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사회책임투자 연구회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월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최도성

목 차

序言	i
I. 사회적책임투자의 정보공개 하부구조	3
1. 사회적책임투자의 정보공개 이슈	3
2. 국내외 주요 ESG 프레임워크와 관련규정	4
3. 국내외 ESG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14
4. 국내외 ESG 관련 평가지수	19
II. 국내외 ESG 정보공개 현황 및 인식수준	31
1. 국내외 ESG 정보공개 현황	31
2. 국내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서 실태	34
3. 한국의 SRI 인식수준 조사	42
III. 사회적책임투자 관련 정보공시 현황 및 해외제도	59
1. 사회적책임투자와 사회적책임투자 정보	59
2. 사회적책임투자정보 공시 현황과 문제점	63
3. 외국의 입법동향과 시사점	65
4. 사회적책임투자정보의 공시제도화 가능성과 제안	78
IV. 사회적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정보공개 방향	83

부록 I. GRI 가이드 라인	89
부록 II. BSR 가이드 라인	101
부록 III. 사회책임투자연구회 참여회원 명단	111

표 목 차

<표 I-1> CR 행동 유형 비교	5
<표 I-2> GRI 지속가능성 보고서 가이드라인	16
<표 I-3> DJSI 지속가능성 지수	25
<표 I-4> FTSE4Good 지수	27
<표 III-1> Regulation S-K와 Sarbanes-Oxley법 비교	72
<표 III-2> 각국의 SRI 관련 기업공시제도화 비교	76
<표 III-3> 각국의 SRI 관련 상품공시제도화 비교	76

그 립 목 차

<그림 I-1> CR 유형에 따른 비즈니스 통합 수준	7
<그림 I-2> ISO 26000 주요 항목	10
<그림 II-1> SRI에 대한 관심 정도	44
<그림 II-2> SRI 성장전망과 투자계획	45
<그림 II-3> SRI 시장 성장을 위한 조건	46
<그림 II-4> ESG 요소와 기업가치 평가	47
<그림 II-5> 기업성과/주주가치와 밀접한 ESG 요소	48
<그림 II-6> 국내 지속가능성 보고서 평가	49
<그림 II-7> SRI 투자기관의 경영관여 허용에 대한 의견	51
<그림 II-8> 선호하는 SRI 투자방법	52
<그림 II-9> 네거티브 스크리닝 대상 업종	53
<그림 II-10> 포지티브 스크리닝 대상 업종 및 이슈	54

발간 참여자의 역할

기획 및 편집	노희진 안승광
I. 사회책임투자의 정보공개 하부구조	
1. 사회책임투자의 정보공개 이슈	임대웅
2. 국내외 주요 ESG 프레임워크와 관련규정	노희진, 안승광
3. 국내외 ESG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안승광
4. 국내외 ESG 관련 평가지수	황은경
II. 국내외 ESG 정보공개 현황 및 인식수준	
1. 국내외 ESG 정보공개 현황	장영욱
2. 국내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서 실태	장영욱
3.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국내 인식수준	류영재
III. 사회책임투자 관련 정보공시 현황 및 해외제도	안수현
1. 사회책임투자와 사회책임투자정보	
2. 사회책임투자정보 공시현황과 문제점	
3. 외국의 입법동향과 시사점	
4. 사회책임투자정보의 공시제도화 가능성과 제안	
IV. 사회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정보공개 방향	노희진

약 어 집

CR: Corporate Responsibility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DJSI: 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es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FTSE4Good: Financial Times Stock Exchange for Good

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PRI: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SIF: Social Investment Forum

SR: Social Responsibility

SRI: Sustainable & Responsible Investment

UNEP/FI: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 Finance Initiative

1. 사회책임투자의 정보공개 하부구조

1. 사회책임투자의 정보공개 이슈
2. 국내외 주요 ESG 프레임워크와 관련규정
3. 국내외 ESG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4. 국내외 ESG 관련 평가지수

I. 사회책임투자의 정보공개 하부구조

1. 사회책임투자의 정보공개 이슈

- 국내에서 주식투자는 이제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투자하느냐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런 시점에서 국내 SRI가 시작되었고 국민연금 또한 SRI를 통한 자산운용을 시작하였음

- 사회책임투자 활성화에 관한 국제적 이슈는 1) 사회책임투자 요소인 ESG 등에 포함될 내용과 기준, 2) ESG 등 관련 기업의 정보공개로 정리될 수 있음
 - 사회책임투자 요소인 ESG 등에 포함될 내용과 기준은 국제표준화 기구(ISO)에서 논의 중에 있음
 - ESG 등 관련 기업의 정보공개 방법은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가 주도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ESG 정보에 포함될 내용 및 공개 기준
 - 수탁자는 사회책임투자를 위해 환경, 사회 및 기업지배구조(ESG) 등을 고려하고, 기업의 경영진은 ESG 이슈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함

2. 국내외 주요 ESG 프레임워크와 관련규정

가. 기업책임(Corporate Responsibility, CR)의 현대적 의미¹⁾

1) 기업책임(CR)의 형태에 따른 구분

- CR과 재무간의 성과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충분히 수행되었음
 - 그러나 CR의 형태에 따른 성과에 대한 연구는 충분치 못함
 - 또한 CR의 사회적 성과에 대한 연구 역시 부족한 편임

- CR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
 - ① 자선(Philanthropy): 기업의 자선 등 공익적 측면을 강조
 - ② CR통합: 좀더 책임 있는 현재 비즈니스 운영 강조
 - ③ CR혁신: 환경/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신규비즈니스 강조

- CR 활동을 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자선활동을 할 것인지 통합 활동에 집중할 것인지를 선택
 - 통합 활동은 제품과 생산, 노동자 대우 등 기업 환경을 포함함
 - 결과적으로 자선 형태의 CR유형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1) Minna Halme, "Something Good for Everyone? Investigation of Three Corporate Responsibility Approaches", *Helsinki School of Economics Working Papers*, 2006의 요약 정리

- 자선 활동은 기부 등의 자선적 활동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것임
 - 이는 핵심 사업이 아닌 기업의 외부활동이며 기업에 직접적으로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함
 - 간접적으로 민감한 공공정책을 최소화하거나 기업의 명성과 시장 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음

<표 I -1> CR 행동 유형 비교

		CR 행동 유형		
		자선 (Philanthropy)	CR 통합 (CR Integration)	CR 혁신 (CR Innovation)
구분	핵심비즈니스 와의 관계	핵심비즈니스 이외의 영역	현재의 핵심 비즈니스에 근접	핵심비즈니스 확대 및 신규사업개발
	기업책임의 목표	부가적 활동	현재 비즈니스 운영에서의 환경 /사회적 성과	제품 및 서비스의 신규 개발
	예상 편익	이미지/평판 개선	핵심비즈니스의 환경/사회측면의 개선	환경/사회적 문제의 완화

- CR통합 활동은 기업의 책임을 핵심 비즈니스와 통합하려는 시도임
 - 이해관계자 경영의 의미로서 기업은 고객, 노동자와 공급자와 같은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책임에 집중하는 것임
 - 즉,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고 R&D투자를 하여 비용 절감 및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임

6 사회적책임투자를 위한 기업 정보공개

- CR혁신은 위의 두 가지 유형과는 또 다른 의미로 제시되고 있음
 - 기업 혁신의 한 요소로써 환경적,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신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임
 - 자선 활동과는 달리 CR혁신은 상생조건을 만족시켜야함
 - 기업이 처한 환경/사회적 문제를 완화시킴과 동시에 해당 사업 개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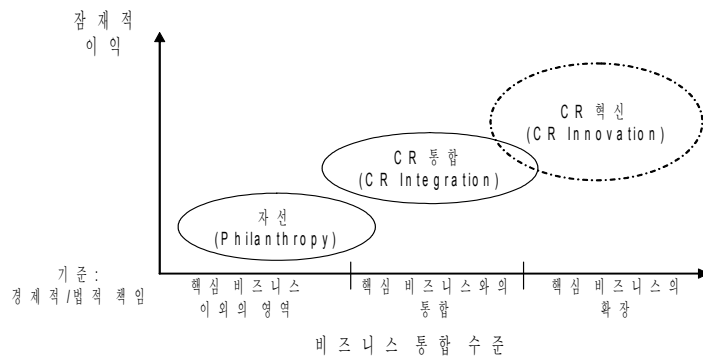
2) CR의 유형에 따른 재무적, 사회적 성과

- CR행동 유형과 재정적 성과와의 관계
 - 고전적 의미에서 기업책임과 재무성과는 역의관계로 알려져 있음 (Zero-sum Game)
 -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CR은 장기적으로 사회적 적법하고 직원에게 동기부여, 에코효율성 또는 다른 이익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직원 충성도를 증가시키고 고객과의 장기적 관계 상승에 기초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옴
 - CR통합 활동은 자선활동에 비해 더 나은 재정적 성과를 나타냄
 - 또한 CR통합과 마찬가지로 핵심사업과 근접한 CR혁신도 자선활동에 비해 기업에 더 많은 이득을 가져올 수 있음

- CR행동 유형과 사회적 성과와의 관계
 - CR은 기업에게 성장에 대한 압박에 대하여 더 나은 해결책 제시해 줄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됨

- 개발도상국에서의 CR은 성장 우선논리에 밀려 사회적 이득을 발생시키지 못할 수도 있음
- 한편, 기부자, NGO 또는 정부의 압력이 없을 때, 기업은 CR활동의 재정적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행동할 인센티브가 거의 없음
- 기업의 자선적 지출이 부패, 단기적 문제, 기술적이고 관리적인 해결책에만 집중하고 CR활동의 특혜자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기대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음
- 이러한 부정적 결과들은 주로 CR의 유형 중 자선활동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으로 CR통합 활동과 혁신활동은 다른 논리에 근거함
- CR의 통합 활동과 혁신활동은 자선활동보다 기업에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옴은 명확함
- 또한 CR의 전략적인 각 접근법들 또한 좀 더 지속가능한 사회적 결과를 가져옴

<그림 1-1> CR 유형에 따른 비즈니스 통합 수준



나. ISO 26000 (Social Responsibilities, SR) 개요

1) ISO 26000 개요

-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는 글로벌 흐름에 따라 "사회책임(SR: Social Responsibilities)"에 대한 국제 표준(ISO26000)을 만들 것을 결의하였고, 2008년 12월 최종완료를 목표로 작업이 진행 중임
 - 2004년 초 UN사무총장인 Kofi Annan의 요청으로 2004년 중반부터 지속가능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포괄적인 국제표준화 작업을 시작
 - 2006년 9월 UN과 ISO는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표준개발협정”을 체결하였음(인권, 노동, 반부패, 환경 표준 제정 합의)
 - 국제표준화기구의 표준규격화에 따라 선진 글로벌기업들의 "기업 사회적 책임" 인증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ISO9001(품질경영), ISO14001(환경경영) 등 기존 국제표준규격에 버금가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됨
 - SR 국제표준의 규격 명칭은 “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ies”이며, 적용대상은 정부, 비정부민간기관, 영리기관, 소비자단체, 노동단체 등 포괄적인 적용범위를 설정
 - 규격의 구성은 원칙, 주요주제, SR 개요, SR 운용, 사례연구, 부속서, 참고서 등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ISO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조직이 사회 및 지역공동체에 혜택을 줄 목적으로 경제, 사회,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균형 잡힌 접근”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1) 금품강요,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 분야
- (2) 환경예방, 환경책임 활동, 환경친화기술 개발 등 환경 분야
- (3) 어린이 노동착취금지, 차별고용 철폐, 결사의 자유, 단체협상권 등 노동 분야
- (4) 건강증진, 질병과의 투쟁, 균등 및 평등 기회제공 등 인권보호 분야

○ ISO SR의 국제적 논의 배경

- ISO는 최근 선진국 중심으로 CSR을 국가표준 또는 단체표준으로 제정함에 따라 이들 국가의 표준이 무역장벽으로 작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표준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음
 - 호주, 프랑스, 스페인, 이스라엘, 멕시코는 자국 SR표준을 제정
 - 캐나다는 CSR인증 제도를 실시 중임
 - 미국 윤리임원협회(Ethics Officer Association)에서 ISO에게 윤리경영표준 제정을 요구하였음

○ ISO SR의 추진경위 및 향후전망

- 추진경위
 - 2001년 9월 ISO 소비자정책위원회 작업반에서 SR검토 시작 (ISO는 브라질과 스웨덴을 Project Leader로 지정)
 - 2002년 9월 ISO기술관리이사회 결의에 따라 SR자문그룹 구성
 - 2004년 10월 기술관리이사회가 신규표준제정안 제출
 - 2005년 3월 제1차 SR W/G 회의 개최(브라질 살바도르)

10 사회책임투자를 위한 기업 정보공개

— 향후전망

- 2008년 2월 위원회초안(CD) 완료
- 2008년 9월 최종 초안(FDIS) 완료
- 2008년 12월 ISO 발간 목표

<그림 1-2> ISO 26000 주요 항목

<p>거대관행</p> <p>공정거래 윤리적 광고홍보 시장지배의 폐해 회피 등</p>	<p>담합활동</p> <p>공정경쟁 원칙 등 기업지배구조 준법감시체계 이사회 구성 및 통합성 투명공시 및 정보공개 리스크 관리 내부감사체계 지적재산 보호 부패방지 메커니즘 내부고발자 보호 등</p>	<p>임직원 및 산업관계</p> <p>평등기회 정당한 임금 및 근로조건 결사의 자유권 임직원의 차별금지 아동노동 금지 강제노동 금지 합리적 정계 관행 합리적 근로시간 및 조건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고충/이슈처리 메커니즘 내부의사소통 메커니즘 등</p> <p>좋은 비즈니스 관계 윤리 구매 공정 입찰 가격담합 회피 등</p> <p>보건 및 안전 안전한 작업 활동 안전한 작업 환경 작업장 위생 시설 적절한 작업장 시설 유해물질 및 위험제품의 관리 인체공학설계 응급사태 대응 공평한 보상, 회복, 제투입 프로그램 등</p>
<p>환경보호/지속가능성</p> <p>지속가능한 생산 에너지 절감 폐기물 및 오염 관리 동식물군/문화재 보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의사소통 등</p>	<p>바람직한 기업시민</p> <p>사회복지에의 기여 인류애 조직의 정보공개 사회책임 보고서 너물부패의 제거 등</p>	<p>제품 책임성 재활용/재사용 설계 에너지 효율성 유해 물질/공정 제거 환경영향 최소화 제품 재활용 제품 처리/폐기물 관리 등</p>

다. ESG 프레임워크

1) 해외 주요 ESG Framework

- Financial Performance

- Revenues and Client Loyalty, Margins and Performance, Profitability and Shareholders Loyalty

- Corporate Governance

- Board structure, Compensation Policy, Board Functions, Shareholders Rights, Vision and Strategy

- Environment

- Resource Reduction, Emission Reduction, Product Innovation, Environmental Management Ability, Strategic Profit Opportunity

- Social Responsibility

- Employment Quality, Health & Safety, Training & Development, Diversity & Opportunities, Human Rights, Community Development, Product Responsibility, Supply Chain Management

2) 국내 주요 ESG Framework

- 전략 및 시스템

- ESG 이슈에 대한 비전, 방침, 마스터플랜
- 최고경영자의 의지, 관련조직,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12 사회책임투자를 위한 기업 정보공개

○ 경제적 측면

- 경영효율성, 기업지배구조, 고객관계경영, 투명경영, 국가경제기여

○ 환경적 측면

- 환경부하관리, 환경경영, 청정생산, 친환경제품개발, 공급망관리, 환경관련 인증 및 수상, 환경규제 위반, 환경정보공개 여부

○ 사회적 측면

- 제품 및 서비스, 인적자원관리, 고용 및 노사관계, 협력사관계, 사회공헌, 소비자권익 보호 및 피해구제,

라. ESG 관련규정(Regulation)

○ 환경적 측면(Environmental Aspect)

-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환경개선특별회계법,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소음진동규제법,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지배구조 및 주주(Governance Aspect)

- 상법, 상법개정안, 증권거래법, 공정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보험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유가증권상장규정, 공정공시제도 등에서 규율

○ 사회적 측면(Social Aspect)

— 고객

-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품 책임

- 제조물책임법, 산업표준화법, 품질경영촉진법

— 임직원

- 고용: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남녀고용평등법, 영유아보육법, 고령자고용촉진법,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여성발전기본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임금: 근로기준법
- 노사관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교육훈련: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 관한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 관한법률, 자격기본법
- 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긴급의료에 관한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정신보건법

14 사회적책임투자를 위한 기업 정보공개

- 복리후생: 근로자복지기본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 이해관계자

- 협력사: 건설산업기본법
- 공공참여: 의료보호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기본법,
- 경쟁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연구개발: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과학기술진흥법,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3. 국내외 ESG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가.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가이드라인

- GRI 가이드라인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재무보고서 수준까지 표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보고서 가이드라인임
 - 현재 전 세계 1000여개 회사에서 본 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지속가능성 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를 주기적으로 발간하고 있음
 -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여부에 따라 자본의 조달여부가 결정되도록 하는 취지임

-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는 1997년 CERES²⁾와 UNEP³⁾에 의해 창설된 기구로서 전 세계적이고 자발적이며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과정을 통해 표준화된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서 가이드라인의 개발과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000년 6월 첫 번째 지속가능성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음
 - 2002년 7월에 두 번째 버전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음(GRI 2002)
 - 2006년 이후 세 번째 가이드라인(GRI G3)을 발표하였음

- GRI에서 요구하고 있는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1)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비전과 전략", (2)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지배구조와 경영체제", (3) 이를 통해 얻은 경제, 사회, 환경 측면의 "성과"를 요구
 - 2007년 5월 현재 전 세계 1, 000여개 기업에서 GRI 기준에 따른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2) CERES는 미국의 보스턴에 본부를 두고 있는 비영리, 비정부단체로서, 회원은 각종 환경관련 단체와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투자전문가단체, 기관투자가, 노동 및 종교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CERES는 환경적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기업 활동에 대한 행동규범인 CERES원칙(이전에는 발데스원칙)을 발표한 단체이기도 하다.

3) UNEP는 1972년 UNCHE(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uman Environment: 국제연합인간환경회의)의 '인간환경선언' 결의에 따라, 제27차 국제연합총회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협력 추진기구로서 설립되었다. 환경분야에 있어서 국제적 협력촉진, 국제적 지식증진, 지구환경상태의 점검을 목적으로 한다. 프로그램은 환경보전·생태계·환경과 개발·자연재해·에너지·지구관찰·환경관리 등의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로 환경감시, 환경평가, 환경과 관련한 기술적·과학적 업무에 치중한다.

<표 I -2> GRI 지속가능성 보고서 가이드라인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지배구조 (Governance Performance)		조직의 지배구조-이사회 산하 위원회
		이사회 의장의 임원 겸직여부
		이사회 독립/비독립적 임원 수
		이사회 조언 방향 제시 메커니즘
		보상과 조직의 성과 간의 관계
		이사회 내 이해관계 충돌방지 프로세스
		이사회구성원의 자격 및 전문성 기준결정프로세스
		ESG활동관련 미션/핵심가치진술문/행동강령 등
		이사회 ESG성과 파악 및 관리 관장절차
		이사회 ESG관련 성과 평가 프로세스
경제적 성과 (Economic Performance)		경제적 성과(Economic Performance)
		시장 반영(Market Presence)
		간접적인 경제적 영향(Indirect Economic Impacts)
환경적성과 (Environmental Performance)		원재료(Materials)
		에너지(Energy)
		물(Water)
		생물다양성(Biodiversity)
		배출물 및 쓰레기(Emissions, Effluents, and Waste)
		제품과 서비스(Products and Service)
		규제위반(Compliance)
		운송(Transport)
		환경관련전반(Overall)

<표 I -2> GRI 지속가능성 보고서 가이드라인(이어서)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사회적 성과 (Social Performance)	고용관행 (Labor Practices) 및 사회적 기준에 적합한 일자리 (Decent Work)	고용(Employment)
		노사 및 고용관계(Labor/Management Relations)
		직업건강과 안전(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훈련 및 교육(Training and Education)
		다양성과 평등(Diversity and Opportunity)
	인권 (Human Rights)	관리관행(Management Practices)
		차별금지(Non-Discrimination)
		결사의 자유(Freedom of Association)
		아동노동금지(Child Labor)
		강제노동(Forced and Compulsory Labor)
		징계관행(Disciplinary Practices)
		인권보호관행(Security Practices)
		원주민권리보호(Indigenous Rights)
	사회 (Society)	지역사회기여(Community)
		부패방지(Corruption)
		공공정책참여(Public Policy)
		반경쟁행위(Anti-Competitive Behavior)
	제조물책임 (Product Liability)	소비자 건강 및 안전(Customer Health and Safety)
		제품과 서비스(Products and Services)
		마케팅커뮤니케이션(Marketing Communication)
고객프라이버시보호(Customer Privacy)		

나. BSR 가이드라인

- BSR 가이드라인은 산업자원부에서 제시한 한국형 지속가능성 보고서 가이드라인임

- 유엔환경계획(UNEP)이 주관하는 GRI와 같은 글로벌 지표는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개발되어 이를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대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중복·복잡한 일부지표는 통합하여 국내기업 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한 한국형 지속가능성 보고서 가이드라인임

- 글로벌 지속가능성(CSR 포함) 관련 모델, 지표를 벤치마킹하여 GRI, AA1000, BiTC, Global Compact,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등 선진 가이드라인을 리뷰하여 주요 내용을 포괄하고 있음

- 지속가능경영의 균형 잡힌 성과 측정 및 보고를 위해 윤리경영, 사회책임경영, 환경경영 뿐만 아니라 혁신경영, 창조경영을 포함한 전체 5가지 요소로 구성됨

4. 국내외 ESG 관련 평가지수

가. 경실련 KEJI 지수

1) 개요

- 경실련 KEJI지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산하 경제정의연구소에서 기업의 윤리경영 및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모델로서 경제정의연구소에서 수여하는 '경제정의기업상'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음
- 이와 유사한 평가모델로는 미국의 「경제최우선 협의회(Council Economic Priorities)」의 CEP Index와 일본의 아사히 재단의 지수 및 유럽 등지의 윤리지수 평가들이 있음
- 1991년 12월 제1회 경제정의기업상 수상을 시작으로 매년 거래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KEJI 지수(경제정의지수)에 의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이루어짐
 - 정량평가는 KEJI 지수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는 7대 평가항목 49개 평가지표, 4개 고려지표로 이루어져 있음
 - 정량평가 전체 상위 10%, 업종상위 20% 기업을 정성평가 대상기업으로 선정하여 설문항목 평가 및 정성평가기준을 적용함

2) KEJI Index 내역

○ 건전성

— 주주구성의 건전성

- 내부지분율(자료원: 사업보고서)
- 전문경영인 정도(자료원: 사업보고서)
- 경영세습상태(자료원: 설문)

— 투자지출의 건전성

- 소비성지출(자료원: 신용평가기관 자료 및 사업보고서
(접대비/인건비))

— 자본조달의 건전성

- 위험성(자료원: 사업보고서, 장/단기 차입금총계/자기자본)
- 관계사 출자(자료원: 사업보고서)
- 관계사 지급보증(자료원: 사업보고서)

○ 공정성

— 공정성

- 공정거래위반건수(자료원: 공정거래위원회)
- 경제력집중(자료원: 대규모기업집단지정여부)

— 투명성

- 불성실공시(자료원: 사업보고서(감사의견, 정정, 오류수정사항))
- 사업보고서 적정성(자료원: 사업보고서)

- 사외이사 비율(자료원: 사업보고서)
- 이사회 참여(자료원: 사업보고서)

— 협력관계

- 자금/기술/경영지원(자료원: 설문)
- 납품대금지불관행 개선(자료원: 설문)

○ 사회봉사 가이드

— 소외계층 보호

- 장애인고용비율(자료원: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실제고용수/의무고용수)X100)
- 여성채용비율(자료원: 설문)
- 장애인 및 여성 고용지원(자료원: 설문)

— 사회공헌

- 기부금(자료원: 사업보고서)
- 사회복지지원(자료원: 설문)

○ 소비자보호만족도

— 소비자권리보호

-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자료원: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 고객만족 신규투자비율(자료원: 설문)
- 고객만족 관련 수상(자료원: 설문)

22 사회책임투자를 위한 기업 정보공개

— 품질

- 품질관련 인증(자료원: 한국인정원 등(ISO9000 등))

— 광고

- 광고비 과다지출 개선(자료원: 사업보고서)

○ 환경보호만족도

— 환경개선노력

- 환경회계공시(자료원: 감사보고서)
- 에너지효율(자료원: 에너지관리공단)
- 환경투자(자료원: 설문)

— 환경친화성

- 환경관련 인증 및 수상
(자료원: 환경부 외(환경마크, 환경보고서, ISO14001 등))

— 위반 및 오염실적

- 수질, 대기분진, 특정유해물질 오염실태(자료원: 환경부)
- 환경위반실적(자료원: 환경부)

○ 종업원 만족도

— 작업장 보건 및 안전인증

- 작업장 보건 및 안전관련 인증 및 수상
(자료원: 한국인정원/한국산업안전공단(OHSAS 18001인증 등))

— 인적자원투자

- 1인당 교육훈련비(자료원: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 교육훈련비 증가율(자료원: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 임금 및 복지후생

- 임금보상수준(자료원: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 복리후생(자료원: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 노사관계

- 노사협의회 운영여부(자료원: 설문)
- 노사분규 발생여부(자료원: 설문)
- 노사관계 개선 프로그램 운영 현황(자료원: 설문)

— 남녀고용평등

- 남녀고용평등법 준수노력(자료원: 설문)
- 대리직급 이상인 여직원 수(자료원: 설문)
- 여성의 최고직급(자료원: 설문)

○ 경제발전기여도

— 연구개발노력

- 연구개발지출(자료원: 사업보고서)
- 특허 및 장영실상(자료원: 특허청,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경영성과 및 경제기여

- 수익성/성장성(자료원: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증권거래소)

24 사회책임투자를 위한 기업 정보공개

- 설비투자/고용인력증가율
(자료원: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증권거래소)
- 조세납부/배당성향(자료원: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증권거래소)
- 노동생산성증가율/수출기여도(자료원: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증권거래소)

나. DJSI(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es)

- 다우존스社와 SAM社(Sustainable Asset Management)은 공동으로 다우존스지속가능성지수(DJSI: 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es)를 발표하고 있음
 - DJSI는 다우존스글로벌지수(DJGI:Dow Jones Global Index) 포함 기업 중 지속가능결과가 상위 10%에 속하는 기업으로 재구성한 지수로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지수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음
 - 현재 DJSI는 세계 50여개 금융기관에서 투가지표로 적극 활용 중임

<표 I -3> DJSI 지속가능성 지수

구분	평가기준
경제	기업지배구조
	행위에 대한 규범/친절/부패와 뇌물행위
	고객관계경영(CRM)
	재무성과
	투자자관계(IR)
	위험관리
환경	환경방침/환경경영
	환경성과
	환경보고서
사회	기업의 사회활동/자선활동
	이해관계자와 관계
	노동기준지표
	인적자본개발
	사회보고서
	인재의 확보와 유지

다. FTSE4Good 지수

- FTSE4Good 지수는 영국의 주가지수 전문기관 FTSE(Financial Times Stock Exchange)에서 '사회책임투자'(SRI : Sustainable and Responsible Investment)의 실적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개발한 주가지수임

26 사회책임투자를 위한 기업 정보공개

- 종목선정기준은 환경적 지속가능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 추구, 이해관계자와 긍정적 관계추구, 보편적인 인권보장 및 지원 등임
 - 선별기준은 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위의 세 분야에서 기업이 투자하는 노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경영시스템을 공개하고 성과를 보고 하도록 장려하고 있음
 - 자문위원회가 도출한 초안을 전 세계적으로 책임성 강한 투자자, 정부기관, 상장기업 및 이해단체로부터 자문을 받은 후 시장으로부터의 피드백을 수렴하여 자체적으로 도출한 초안을 수정하여 최종 확정하는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하고 있음
 - 담배제조, 우라늄 추출, 핵무기의 부품 혹은 전체 생산, 무기류 제조, 핵발전소 소유 혹은 운영 등의 산업과 연관된 기업은 지수편입에서 제외함

<표 I -4> FTSE4Good 지수

구분		세부지표
환경 (Environment)	환경방침	핵심이슈에 대한 기업의 방침
		이사회 및 환경부서의 책임
		외부 Reporting, 모니터링, 감사
		전 세계적으로 이용되는 기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정도
		제품 및 서비스의 영향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침
	환경경영	환경방침의 존재
		주요환경영향의 규명
		문서화된 목표 및 세부목표
		절차, 매뉴얼, 실행계획의 개요
		내부 감사 및 보고
	환경보고	환경방침
		주요영향
		정량적인 자료공개
		목표 대비 성과
		환경경영시스템의 개요
		법규 위반, 벌금, 사고
		재무적 측면
		독립적 검증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지속가능성 이슈에의 포함		

<표 I -4> FTSE4Good 지수(이어서)

사회 및 이해관계자 (Social & Stakeholder)	이해관계자 관련방침	Code of Ethics 채택
		Business Principles 채택
		동등한 기회 및 다양성
	이해관계자 경영	탄력 근무제 및 가족 혜택
		여성비율 10%이상
		소수민족 비율
		보건 안전시스템
		교육 및 종업원 계발 시스템
		노사관계 유지
	관련 사례 및 성과	5만 파운드 이상의 자선 기부금
인권 (Human Right)	인권방침	인권경영방침
		이사회의 책임
		ILO 및 UN Global Compact 준수
		UDHR 준수
		인권경영 실행 및 모니터링
	인권경영	임직원 인권 교육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인권에 관련된 영향 평가
	사례 및 성과보고	인권관련 사례 및 성과보고
		인권경영 시스템 및 방침 수준

II. 국내외 ESG 정보공개 현황 및 인식수준

1. 국내외 ESG 정보공개 현황
2. 국내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서 실태
3. 한국의 SRI 인식수준 조사

II. 국내외 ESG 정보공개 현황 및 인식수준

1. 국내외 ESG 정보공개 현황

가. 해외기업

- 2005년 미국을 비롯한 23개 글로벌 사회책임투자회사 관련자들이 GRI 가이드라인에 따른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음

- 2007년 4월 S&P Index 100개 기업 중 거의 절반 정도인 49개 기업이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38개 기업이 GRI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음
 - 이는 전 년에 비하여 14% 증가한 것임
 - S&P 100 기업 중 79개 기업이 홈페이지에 ESG 관련 자료를 게시하고 있음

- 유럽의 여러 국가들과 호주 등에서는 상장 기업의 ESG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기금 중심의 ESG 투자결정고려여부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 기업이 시장 외에 관심을 두는 것은 시장 밖의 국제적 규범이라고 볼 수 있으며, UN, GRI, ISO와 같은 기준이 여기에 속함

나. 국내기업

- 국내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2003년 한화석유화학, 삼성SDI, 현대자동차를 시작으로 2007년 6월 기준 약 33개 기업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2005년 이후 공기업의 적극적인 도입이 두드러짐
- 2007년 6월 기준으로 GRI에 보고서를 등록한 기업은 1041개이며, 이 중 23개가 국내기업임
- 현재 국내 33개 기업이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나 질적, 양적인 면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환경부분은 국제적인 무역장벽의 기능을 하고 있어 기업차원의 체계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이나 실제적으로 적절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노동, 인권 등의 분야에서의 정보가 빈약함
 - 국내기업의 환경, 사회, 경제 등의 지표를 고루 담고 있는 GRI 지표 보고 준수율은 평균 45%에 불과함
 - 지속가능성 보고서가 기업의 일방적인 홍보차원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는 CSR이 사회공헌이나 기부행위, 윤리강령 표명여부와 같은 단순한 것으로 오해 또는 이해 부족에 의해 비롯됨

-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경영전략으로써 국내외 경쟁력강화, 리스크 관리, 국제적 규범 준수 등 지속가능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기업의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중요함
 - 포드사는 '지속가능성 이슈는 우발적인 사건도 아니고 피해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이 문제는 at the heart of our business'라고 언급하였음

- 국내기업들은 NIKE사와 같은 글로벌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적극 활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임
 -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전후 작업을 일관되고 투명하게 하고, 경영에 활용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자료수집전략 및 목표설정, 자체교육, 모니터링, 평가 등이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또한, 이해관계자(노조, NGO, 학계, 펀드매니저 등) 의견을 반영하고 더불어 제 3자 인증 등이 필요함

- 투자자의 입장에서 투자가치에 영향을 미칠 정보에 대한 갈증 해소 차원에서 적절하고 충분한 기업의 ESG 정보는 필수적이며 SRI 시장 관련자들은 기업정보공개에 대한 요구의 뜻을 확실하게 표명하여야 할 것임
 - 지속가능성 보고서가 통일된 기준으로 작성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이는 이미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GRI 가이드라인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그 다음 논의가 공시제도로서 이는 정부, 기업 학계, NGO 등 관련자들의 합의 도출을 위한 논의가 필요

2. 국내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서 실태

가. 실태조사 개요

○ 실태조사 개요

- 국내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책임을위한시민연대(현 기업책임시민센터)에서 그 실태를 조사하였음
- 2005년의 활동성과를 2006년 1~11월 사이에 지속가능성 보고서 형태로 발간한 22개 기업을 대상으로 함
- 삼성전자, LG전자, 삼성SDI, 삼성전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포스코, GS칼텍스, 유한킴벌리, 웅진코웨이, KT, SK텔레콤, 신한은행, 대우증권, 대한항공, 아시아나, 롯데백화점, 한국전력공사, 남동발전, 중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 분석방법

- 발간 기업의 보고서를 경제/환경/성과로 나누어서 발간기업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GRI 2002 가이드라인과 GRI G3가이드라인으로 나누어 평가함

나. 분석결과

1) 경제적 성과 분석 주요 결과

- 공급자(협력업체)와의 구체적인 거래 실적 등과 같은 구체적인 데이터가 취약함
 - 대부분의 기업이 보고서에 공급자 선정 시 투명한 원칙과 절차를 강조하고, 공급자와 공정한 상생 협력 구축 등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 반영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공급자와의 거래 실적 등의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음

- 종업원에 대한 자료 부족
 - 종업원 현황 보고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장별, 국가별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 국내 사업장에 국한되어 있음
 - 직급별, 직군별, 성별 등 다양하고 입체적인 정보제공이 미흡

- 세금 및 수취 보조금에 대한 총괄적인 정보가 부족
 - 해당 항목에 대한 국가 및 시장별 분류 보고가 미비
 - 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국세, 지방세, 관세 등으로 나누어 보고하는 기업도 드뭄

- 지역사회 및 사회공헌 활동 등의 지원 금액에 대한 상세보고 부족
 - 대부분의 기업이 보고내용을 전체적인 지원금액만 제시하고 있음 지역별/단체별로 나누어 상세히 보고할 필요가 있음

- 간접적 경제효과에 대한 보고가 임의적이고 편파적임
 - 대부분의 기업이 기업의 활동과 관련되어 발행하거나 발생한 간접적인 경제효과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 명시하지 않고 단편적인 성과만 보고하며 긍정적인 간접효과만 제시하고 있음

- 경제적 성과 보고의 문제점
 -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이 늘고 시장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대상범위가 주로 국내 사업장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보고데이터가 대부분 보고년도에 국한되어 있어,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개선 정도를 파악하기 용이하지 않음

2) 환경적 성과 분석

- 간접 에너지 특히, 운송 등의 조직 활동으로 소요된 에너지 등에 대한 보고가 미약함

- 기업 활동으로 영향을 미친 생물다양성에 대한 보고는 거의 없음

- 배출물질에 대한 보고가 전체적으로 보고되고 있을 뿐 종류별, 형태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공급자 선정에서 환경성과를 중요한 기준으로 감안하고 있다고 제시된 경우는 많으나 구체적인 계약 성과를 제시하는 기업은 드물

-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적 영향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은 제시되고 있으나, 영향 정도와 절감 성과가 실제적으로 계량화되어 제시되고 있지는 못함

- 총 환경비용을 제시한 기업이 절반에 이르고 있으나, 그 기준이 다양하고 환경비용을 형태별로 보고한 기업이 드물

- 환경성과 보고의 문제점 요약
 - 환경성과 보고의 목적
 - 경영활동에 소요된 직·간접 에너지 및 폐기물 소비 감축 노력과 구체적인 성과측정
 - 경영활동으로 인해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주변 환경에의 대응 노력과 법규 준수 여부
 -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저감 노력 및 성과 평가
 - 공급자 관리 등과 같은 실제 생산활동 참여자들의 환경 리스크 관리 등을 살펴봄으로써 보고 기업이 어떻게 환경 저감 활동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환경 부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있는 지 파악하기 위함
 - 현재 한국 기업들이 보고하고 있는 환경적 성과 수준으로는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에는 공개하고 있는 데이터의 양이 부족함

- GRI 가이드라인에는 관련 지표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업의 특성상 관련 지표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할 수 없는 지, 보고 데이터가 미 수집되어 그러한 지 등의 미보고 원인을 밝히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는 기업은 거의 없음
- 주요지표에 대한 평면적인 보고만 이루어지고 부가지표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시계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는 기업이 소수로, 환경 성과 개선 여부를 알기가 쉽지 않음

3) 사회적 성과 분석

가) 노동

- 고용상황과 관련되어서는 주로 국내 사업장별 남녀비율 등과 같은 평면적인 보고에 그치고 있으며, 고용형태별, 고용계약별 현황 보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노조 현황에 대한 보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종업원 대표의 참여 규정은 보고를 하지 않거나 노사협의회 제시로 대치하고 있음 그러나, 회의 횟수, 주요 안건 및 논의 결과 등과 구체적인 운용 내용과 그 결과가 기업경영에 반영된 실제적인 내용은 보고되지 않음
- 전체적인 산업 재해율은 보고하고 있으나, 이를 상해, 작업손실일수, 결근율, 사상자수 등과 같이 세분화하여 보고하는 기업이 적음

- 교육훈련 부분에서도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은 대부분 보고되고 있으나 담당기관, 참여율, 교육비, 교육시설 등과 같은 구체적인 데이터는 제시되고 있지 않음

나) 인권

- 인권보장, 차별반대, 불법 노동 반대를 지지하는 정책은 제시되어 있으나, 이를 위한 이해관계자의 모니터링 메커니즘과 그 운용 결과를 제시한 기업은 없음
- 인권 부분을 공급자 선정의 주요 기준으로 사용한다고 보고한 기업은 소수에 머무르며, 공개한 기업도 공급자 선정의 구체적인 결과물을 제시한 곳은 없음
- 보안직원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한 기업은 전무함
- 직원의 항의 관행과 내부 고발자 보호에 대해서 원칙만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처리과정과 결과가 제시되지 못함

다) 사회

- 지역주민의 요구사항, 지역사회 영향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은 대부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과 결과를 제시한 기업은 없음

40 사회책임투자를 위한 기업 정보공개

- 뇌물과 부패, 정치자금 기부, 공정경쟁 및 가격결정 위반에 대한 원칙을 밝히지 않거나 실제적인 위반 여부를 밝히지 않는 기업이 다수임

라) 제조물 책임

- 고객 보건안전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은 대부분 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프로그램이 운용된 결과물을 제시한 기업은 없음
- 제조물 책임과 관련한 위반 사례 및 민원제기 여부, 민원제기를 받았다면 그 횟수와 처리결과를 밝힌 기업은 거의 없음
- 라벨링 위반과 관련되어서도 자발적인 준수 강령을 밝힌 기업은 많았으나, 위반 사례 유무를 명확히 밝히거나 모니터링 시스템과 결과를 제시한 기업은 없음
- 광고와 관련되어 자발적인 준수 강령을 밝힌 기업은 많았으나 위반 사례 유무를 정확히 밝히거나 모니터링 시스템 및 그 결과를 제시한 기업은 없음
- 고객 프라이버시와 관련되어서도 기본 정책을 밝히지 않은 기업이 상당수이며, 모니터링 시스템과 고객 불만 제기건수 및 처리결과를 밝힌 기업도 드물
- 기업의 사회적 성과가 진정으로 검증받기 위해서는 보고 기업이 원칙과 정책에 대한 제시를 멈추어서는 안 됨

- 즉, 관련 법규의 실제적인 준수 여부,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모니터링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등이 제시되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기업 경영에 반영되었는지 총체적으로 보고가 되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22개 기업 대부분이 사회적 성과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정책과 프로그램만 제시하고 있는 점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함

다. 전체적인 총평과 개선점

- 현재 대부분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기업의 성과데이터는 보고년도 이전의 1년 간 데이터만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지속가능성 보고서가 자신들의 ESG 성과를 투명하게 밝히고 이에 대한 중장기적 전략과 성과를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 평가를 받고자하는 자발적 노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성과데이터는 최소 3년 치를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조사결과 기본 지표에 대한 보고율이 기업마다 매우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음
 - 지표를 보고했다고 명시한 기업들 중에서는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한 내용의 일부만을 명시한 채 보고여부항목에 기표를 하는 기업도 상당수였음
 - 또한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보고서의 다른 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데이터를 표기한 기업도 존재하였음
 - GRI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지표를 보고서에 담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이 반복될 경우 지속가능경영 보고 수준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기업들은 보고율을 높이고 독자의 접근가능성을 개선해야 할 것임

○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와 데이터 수집이 요구됨

- 국제적으로 유럽의 신화학물질관리정책(REACH)과 기후변화협약 준수 압력이 갈수록 증대될 전망 속에서 기업들은 현대 범규로 강제 준수되고 있는 물질뿐 아니라 기타의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와 데이터 수집이 요구됨

3. 한국의 SRI 인식수준 조사

가. 들어가며

- 한국의 SRI 인식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투자 관련 전문가 집단 및 기업 IR 담당자의 SRI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수준을 분석하여 국내 SRI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파악하고, 그 조건들을 밝히고자 함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에서 실시한 본 조사에서 그 대상은 국내 애널리스트 400명, 펀드매니저 373명과 대한상공회의소 KOCHAMBIZ 참고 매출액 상위 100위 기업의 IR 담당자 100명을 모집단으로 하였음

- 설문대상은 애널리스트 150명, 펀드매니저 222명, IR 담당자 100명으로
합계 472명에게 설문을 발송하였음 발송한 설문 중 총 139개를
회수하여 29.4%의 응답률을 보였음
 - 139명의 구성은 애널리스트 50명, 펀드매니저 43명, IR 담당자 46
명으로 구성됨
 - 설문기간은 2007년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8일간 진행

나. 한국의 SRI 시장의 현재와 미래

- SRI에 대한 관심 증대와 향후 성장에 대한 기대
 - 응답자의 58%가 2년 전에 비해 SRI에 대한 전반적인 국내의 관심
이 향상되었다고 답하였으며 SRI가 주류 투자방식으로 확장될 것
이라는 응답자가 전체의 49%를 차지해 향후 과거에 비해 SRI의
높아진 위상을 알 수 있음
 - 한편, 애널리스트의 66%가 향후 SRI의 성장에 긍정적인 전망의사
를 보인 반면, IR담당자들은 34%만이 낙관적이라는 견해를 보임
으로서 상대적으로 기업의 IR담당자들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 일반적 관심보다 높은 투자 전문가들의 관심(그림 II-1)
 - 국내의 전반적인 관심향상에 대한 평가보다, 애널리스트와 펀드매
니저를 포함하는 투자 전문가 집단 내의 관심 수준이 더욱 높게
평가 됨

44 사회적책임투자를 위한 기업 정보공개

- 양 집단의 수준을 단순 비교하기 위해 5점 척도의 각 응답들 평균하여 그 분포의 경향만 확인한 결과, 전반적 관심 향상은 3.793으로 평가된 반면, 투자 전문가 집단의 경우는 3.982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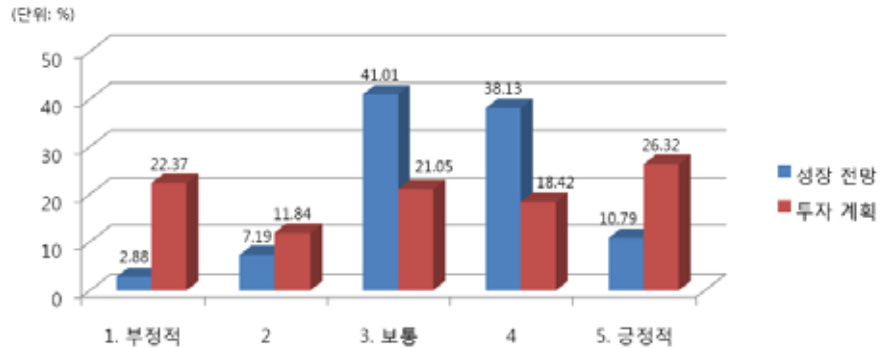
<그림 II-1> SRI에 대한 관심 정도



○ SRI 성장에 대한 기대와 실제 투자 계획과의 괴리(그림 II-2)

- SRI가 향후 위상이 향상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 결과에 비해 실제로 해당 회사가 SRI 투자계획이 있다고 한 응답자 수는 상대적으로 낮음
- 성장전망(왼쪽)과 투자계획(오른쪽)의 분포가 대조적임
- 한편 Buy-side로서 투자를 실행하는 펀드매니저들의 경우 투자계획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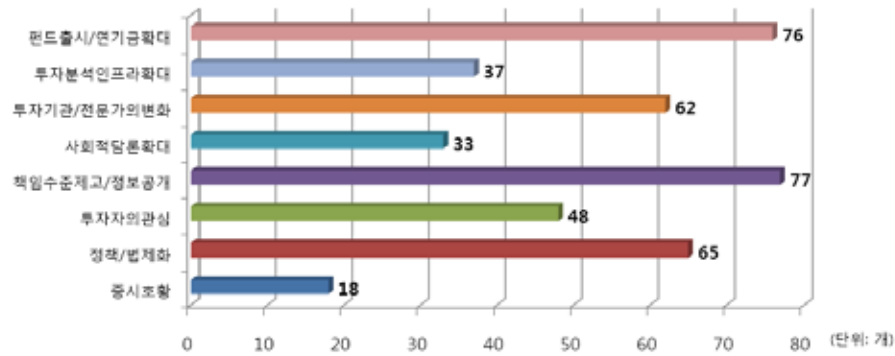
<그림 II-2> SRI 성장전망과 투자계획



○ SRI 시장 성장을 위한 조건들(그림 II-3)

- SRI 시장이 성장하기 위한 조건들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준의 제고 및 ESG 정보공개확대’와 ‘SRI형 펀드의 출시 및 연기금의 SRI 투자확대’로 꼽고 있음
-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 집단의 응답결과는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나, IR담당자의 경우 오히려 ‘투자기관 및 전문가들의 관심 및 인식 변화’에 보다 많은 응답을 함으로써 투자 전문가와 전문가 집단의 인식변화 우선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음
- ‘증시호황’에 대해서는 모든 집단에서 SRI 시장의 성장조건으로는 낮은 점수를 받아 SRI 시장의 성장과 증권시장의 성장과는 상대적으로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II-3> SRI 시장 성장을 위한 조건



다. 기업 평가와 ESG 요소

- 기업의 ESG 성과는 기업성과/주주가치에 기여(그림 II-4)
 - 전체 응답자의 63%가 기업의 ESG 성과가 기업 성과나 주주가치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고 응답함
 - 위 결과가 ESG 성과와 기업성과/주주가치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실증적 분석결과와는 아니나, 기업 가치와 ESG 성과 사이에 전반적인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국내 전문가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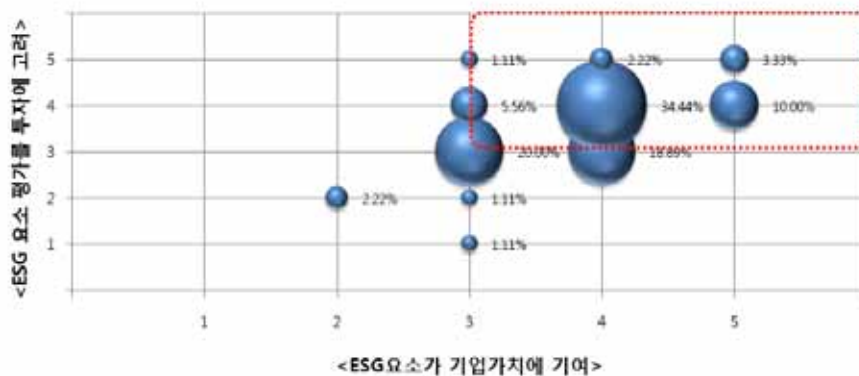
- ESG 성과 기여에 대한 IR 담당자들의 보수적 평가
 - IR 담당자들은 투자 전문가 집단에 비해 ESG 성과와 기업가치의 상관관계에 대해 다소 보수적인 견해를 보임

- IR담당자와 투자 전문가 집단에 1은 ESG요소가 기업의 성과에 대한 기여정도를 1은 '별로 안함', 3은 '보통', 5는 '많이 기여'로 하여 5점 척도로 설문하였을 때, 평균치를 비교하면 투자 전문가 집단 3.783과 IR담당자 집단 3.283으로 IR 담당자 집단의 평균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ESG 요소를 중시하는 만큼 투자 시에도 고려(그림 II-4)

-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들은 실제 투자 시에도 기업에 대한 ESG 요소 평가 결과를 투자에 반영하여 ESG 성과의 기업가치에 대한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만큼 실제 투자행위에도 이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기업가치에 대한 ESG 성과의 기여도를 X축에, ESG 요소 평가를 투자에 고려하는 정도를 Y축에 놓고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우상향의 분포를 보여 양자간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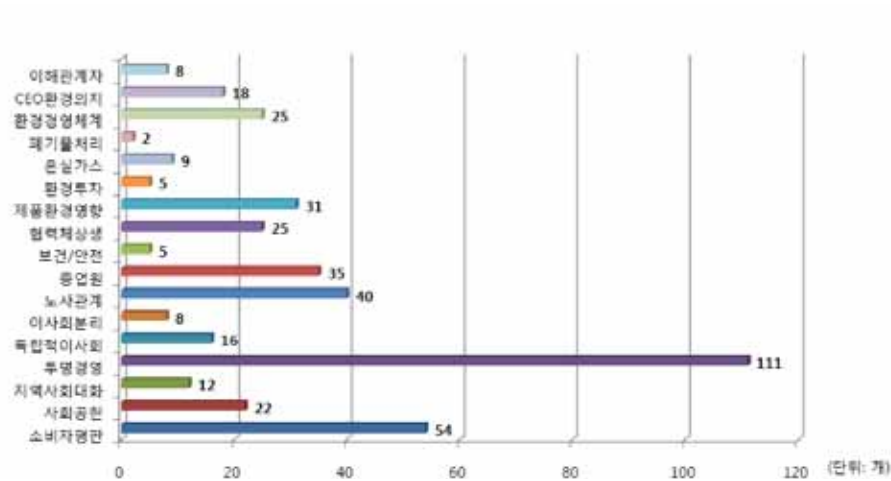
<그림 II-4> ESG 요소와 기업가치평가



○ ESG 요소 중 기업성과 및 주주가치와 밀접한 요소(그림 II-5)

- 전체적으로 ‘투명한 기업경영’을 가장 밀접한 요소로 꼽았으며, ‘소비자로부터의 평판 및 관계’가 그 뒤를 잇고 있음
- 특이점은 전 지구적으로 참여한 이슈로 부각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 문제’에 대해서는 낮은 응답 수를 보여 해외의 상황과는 대조적임

<그림 II-5> 기업성과/주주가치와 밀접한 ESG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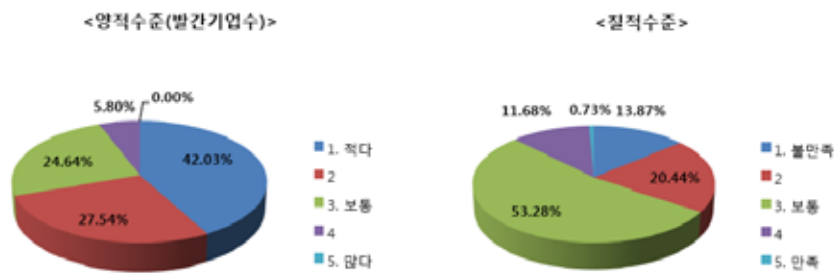


라. 국내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대한 평가

- 양적 질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 국내 지속가능성 보고서 (그림 II-6)

- 국내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기업 수(양적 수준)에 대해서는 69%가 적다고 응답하였으며, 질적 수준 역시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12%에 그쳤음
- 특히,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질적 수준에 대해 절반이상(53.28%)이 ‘보통’이라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대한 관심 자체가 부족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친숙하지 않은 대상으로 판단유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림 II-6> 국내 지속가능성 보고서 평가



- IR담당자에 비해 투자 전문가들의 평가는 부정적
 - 기업 정보의 제공자인 IR 담당자들의 평가와 기업 정보를 통해 투자 의사를 결정하는 투자 전문가 집단의 견해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양적 수준이나 질적 수준에서 IR담당자가 투자 전문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양 집단간의 인식차이를 드러냄

- 보고서 발간 및 공시 법제화에 다소 부정적 견해를 드러낸 IR담당자
 - 양적, 질적 수준에 대한 평과와 마찬가지로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이나 ESG요소 공시 법제화, 의무화에 대해서도 각 주체별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음
 - IR담당자들은 법제화, 의무화에 대해 '보통(3)' 점수를 하회하는 부정적인 분포를 보이는 반면, 투자전문가 집단인 애널리스트나 펀드매니저들은 찬성에 가까운 입장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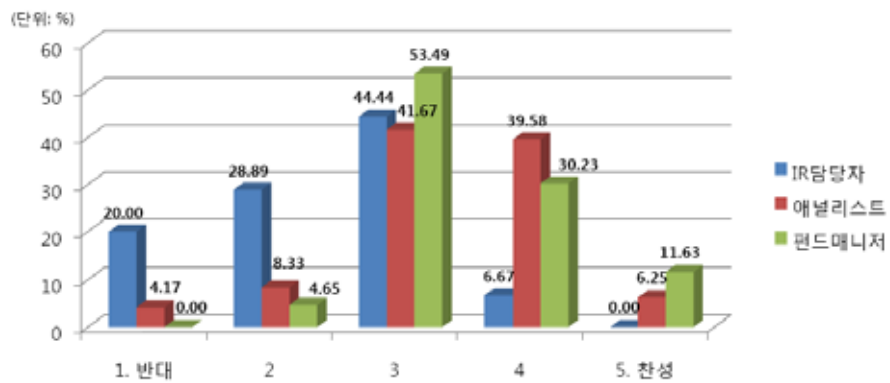
- 국내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 요구되는 개선점
 - 국내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대한 개선점으로는 '정보 공개 수준의 질적 제고 및 양적 확대'를 가장 시급한 개선점으로 보았으며 '전략의 일관성'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대한 개선도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정보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제3자 인증과정의 의무화' 문제나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의견 반영'에 대해 확연히 낮은 응답 수를 보임

마. SRI와 경영관여

- SRI 투자기관의 경영관여 허용에 대한 부정적인 IR 담당자(그림 II-7)
 - ESG 평가에 대한 투자기관의 경영관여에 대해 IR담당자와 투자전문가 집단 사이에 확연한 견해 차이를 보임

- IR담당자(49%)가 경영관여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보이는 반면, 투자 전문가 집단인 애널리스트(46%)와 펀드매니저(42%)들은 찬성의 입장을 보임
- 평균치의 비교에서도 IR담당자 2.378점 투자전문가 3.418점으로 IR담당자가 '보통(3)'을 하회하는 점수를 보임

<그림 II-7> SRI 투자기관의 경영관여 허용에 대한 의견



- 경영관여와 주주가치의 관계에 부정적인 견해의 IR담당자
 - 경영관여 허용에 대한 응답과 마찬가지로 경영관여가 주주가치에 기여하는 수준에 있어서도 IR담당자(37%)와 투자전문가 집단이 애널리스트(61%), 펀드매니저(84%)가 뚜렷한 견해 차이를 보였음
 - 평균치 비교에 있어서도 IR담당자 2.717점으로 투자 전문가 집단 3.815점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남

○ SRI 펀드의 경영관여 방법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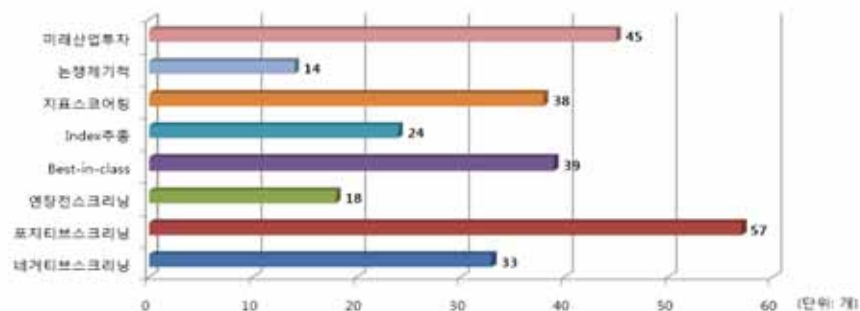
- SRI 펀드의 경영관여 방법으로 '비공식적 우호적 대화(108표)'와 '의결권 행사(88표)'가 가장 선호하는 방법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서는 IR담당자와 투자전문가 집단의 의견일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 외 경영진교체, 임시 주주 총회 소집, 타 기관 공조, 주주제안, 기타, 위임장포대결 순으로 나타났음

바. SRI 투자방법

○ 선호하는 SRI 투자방법(그림 II-8)

- SRI 투자방법으로 가장 선호되는 방법은 '포지티브 스크리닝'으로 나타났으며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가 두 번째를 차지하여 주목을 받았음
- SRI투자방법의 원류라 할 수 있는 '네거티브 스크리닝'은 선호도가 높은 방법이 아님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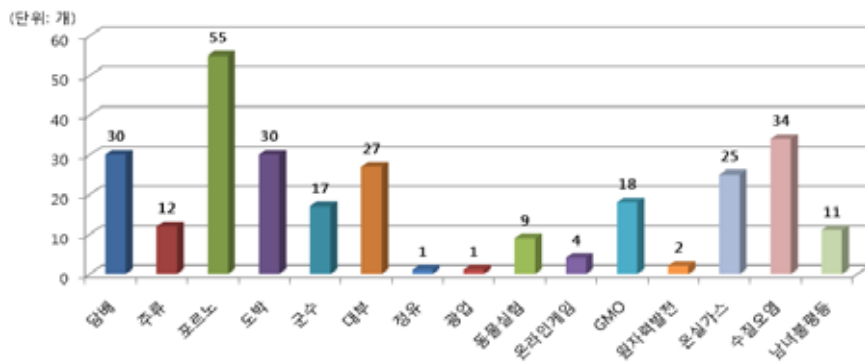
<그림 II-8> 선호하는 SRI 투자방법



○ 네거티브 스크리닝 대상 업종(그림 II-9)

- 네거티브 스크리닝 대상 업종으로 ‘포르노 관련 산업’(55)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수질오염’(34), ‘담배업’(30), ‘군수산업’(30)임
- 최근 해외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온실가스 문제가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크게 주목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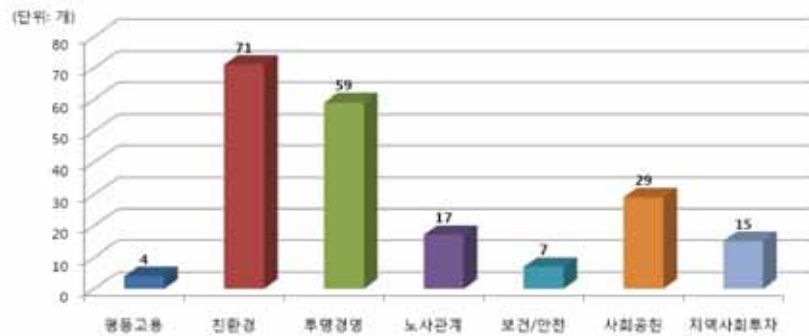
<그림 II-9> 네거티브 스크리닝 대상 업종



○ 포지티브 스크리닝 대상 업종 및 이슈들(그림 II-10)

- 포지티브 스크리닝 대상 업종 및 이슈에 대해서는 ‘환경친화기업 및 산업’(71)이 가장 많았으며 ‘투명경영’(59)이 그 뒤를 이음
- ‘사회공헌기업’(29)이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여타 낮은 업종이나 이슈들 보다는 높은 응답자 수를 보이는 것이 특징임

<그림 II-10> 포지티브 스크리닝 대상 업종 및 이슈



사. 시사점

- 해당 설문 조사 결과 한국의 SRI 시장은 지속적으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성장도 큰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시장성장의 조건으로 'CSR 수준의 제고 및 ESG 정보 공개의 확대'가 선행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IR담당자와 투자 전문가 집단 모두 ESG는 주주가치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투자 시에도 고려하는 가에 대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음 특히, ESG 이슈 중 가장 주주가치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것이 "투명한 기업 경영"으로 보고 있음
- 국내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대한 평가는 양적, 질적으로 모두 미흡한 상태로 정보공개 수준의 질적 제고 및 양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음

- 투자 전문가 집단에서는 경영관여가 주주가치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내었으며 방법론으로는 '우호적인 것'을 선호함

- SRI 투자방법으로서 '포지티브 스크리닝' 방법을 선호하였음 '네거티브 스크리닝'시에 가장 먼저 배제되는 산업으로 '포르노산업'을 꼽았으며 선호하는 산업은 '친환경 산업'으로 나타남

III. 사회책임투자 관련 정보공시 현황 및 해외제도

1. 사회책임투자와 사회책임투자정보
2. 사회책임투자정보 공시 현황과 문제점
3. 외국의 입법동향과 시사점
4. 사회책임투자정보의 공시제도화 가능성 및 제안

III. 사회책임투자 관련 정보공시 현황 및 해외제도

1. 사회책임투자와 사회책임투자 정보

가. CSR과 SRI의 개념 및 구분

- CSR(Corporate Social Liability)은 기업의 사회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고 SRI(Socail Responsibility Investment)은 기업의 재무적 수익, 환경, 사회적 영향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한 투자를 의미함

- 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기업의 환경, 사회적 책임, 경제적 영향 등 비재무적 정보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는 것임

나. SRI 관련 정보의 특징과 유형

- SRI 정보의 특징 및 유형
 - SRI의 정보의 가장 큰 특징은 비재무적인 정보라는 것임
 - 유형 및 구분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이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 최광의의 사회책임 정보로는 재무정보를 제외한 비재무적 정보 일체로 환경, 노동, 사회, 인권, 윤리, 명망, 무형자산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함

- 광의의 사회적책임정보는 대체로 환경, 사회, 경제적 영향에 관련된 정보를 의미하는 경향이 있음 상기의 두 범주의 정보는 CSR 정보로서의 의미도 가짐
- 협의의 사회적책임정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중요한 투자 정보로서 CSR을 제외한 투자정보로서 비재무적인 정보를 뜻함

○ 정보의 개념 차이와 규제 상의 차이

— CSR정보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심을 갖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기업행동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 CSR 제외한 비재무적 정보

- 주주·투자자의 수익 창출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제공 강화측면에서 요구되는 정보

— CSR 정보에 대해서는 기업공시 의무화에 부정적인 견해가 존재

- 이는 이러한 정보가 전통적인 회사법제 패러다임과 부조화를 이루고 정보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며 열린 정보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기업성과와의 상관성이 불명확해 보이기 때문임

— 이에 비해 CSR을 제외한 SRI를 위한 비재무적 정보는 투자자의 필요정보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어 기업공시화가 용이하고 입법례 또한 다수 존재함

다. SRI 관련정보에 대한 수요 증대 및 배경

1) 사회책임투자정보의 중요성 인식

○ 투자정보로서 인식하기 시작

- 특히 환경정보의 경우 기관투자자들이 중대한 투자정보로 인식하기 시작함
 - 기후변화와 관련한 기업의 투자 위험과 대응방침 등에 관해 적극적으로 공시요구 움직임
 - Carbon Disclosure Project, Investor Network on Climate Risk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임

○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으로 인식하기 시작

- 투자대상기업이 직면한 위험에 관한 정보입수 및 이에 기초한 위험평가와 투자결정을 하는 것이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의 하나라는 인식확대

○ 기업의 위기관리태세에 대한 정보로서 인식

- 기업이 직면한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한 위기관리태세를 평가하기 위한 정보로서 인식

○ 사회·환경문제의 새로운 해결수단으로 주목

-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으로서 기업의 사회책임에 주목하고 이에 투자자가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

2) 사회책임투자의 급속한 확산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심이 있는 개인 투자자에 국한되었던 것에서 기관투자자의 관심 증대와 참여로 사회참여투자정보에 대한 수요를 일반화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음
 - 금융기관의 경우 상품화 내지 브랜드로 활용함에 따라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국민연금 등 대형 기관 투자자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지고 있음

- 사회책임투자 관련단체의 증가·수요 진작
 - 사회책임투자연구회, 컨설팅, 기업평가·등급 인증기관, 관련 NGO 활동 증대

3) 국제적 움직임

- 국제적으로 사회책임정보공시에 대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UN PRI와 EU의 회계 현대화 지침이 대표적임

- UN PRI(The Principle for Responsible Investment)
 - 투자대상기업에게 ESG 이슈 관련 정보를 요구할 것을 기관투자자에게 촉구

- EU 회계 현대화 지침(Accounts Modernization Directive)제정
 - 연차보고서에 환경·사회관련 정보를 포함, 공시하는 내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회원국들은 2005년부터 동 지침의 국내법에 수용이 의무화됨

2. 사회책임투자정보 공시 현황과 문제점

가. 사회책임투자정보 공시 현황

1) 기업공시

- 기업이 사회책임 관련 정보를 환경보고서, 지속가능성 보고서, CSR 보고서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시함
 -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국내기업 수는 2007년 3월 기준으로 29개사이며 이중 GRI 등록기업은 18개사임
 - 미국의 경우 상위 250개 기업의 65%이상이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2006년 기준)
 - GRI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한 기업 수는 일본 128개, 미국 84개, 영국 83개 등 총 51개국 814개임(2006년 3월 기준)

2) 상품공시

- SRI펀드의 경우 기업의 환경·사회적 측면을 고려하고 있음을 공시
 - 투자설명서의 투자목적, 투자전략 항목에서 공시하고 있음

나. 사회책임투자정보 공시의 문제점

1) 기업공시

- 일반적으로 사회책임투자 관련정보의 투자정보로서의 성격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재함
 -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을 통해 자발적으로 사회책임 관련 정보제공 시 정보대상을 임의적으로 선정, 작성하는 경향이 존재하여 기업 간 내지 동일 기업 간 비교가 곤란함
 - 내용과 구성이 임의적으로 맡겨져 있어 Positive 성격의 홍보성 정보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부정확, 오인가능성, 허위기재 가능성 등으로 인해 신뢰가능성이 적음

2) 상품공시

- 일반적으로 기관투자자의 경우 사회책임 관련정보를 투자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나, SRI 외에도 장기 투자성 상품인 경우 잠재적으로 위험과 기회가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운용자가 고려하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시하는 것이 필요
 - 투자설명서에 투자전략과 투자위험항목에서 기재된 사회책임기업 여부에 대한 판단은 기업이 제공한 정보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음
 - 그러한 점에서 기업의 해당 정보가 부실, 부정확 할 경우 상품의 성격에 대해 신뢰하기가 어려움
 - 기업의 SRI 관련 정보공시는 투자자 이익과 SRI 산업의 성공을 좌우할 것으로 보임

3. 외국의 입법동향과 시사점

가. 외국의 입법동향

1) 유럽

가) EU

○ 동향

- 정책적 아젠다로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정식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사회책임정보의 공시에 관한 일련의 촉구, 권고, 지침발표가 정보공시제도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음
- EC 위원회에서 「보다 바람직한 세계를 위한 지속가능한 유럽: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EU전략」을 공표(2001)
 - 종업원 500인 이상의 상장기업의 경우 연차보고서에 경제, 환경, 사회에 관한 성과 정보 공시를 요구하고 있음
- “결산과 연차보고서에서의 환경문제의 인식, 측정, 공시”를 권고
 - 부속문서인 가이드라인에서 환경문제가 기업의 업적과 재정상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경우 환경방침, 환경프로그램, 주요한 환경문제 진행, 환경성과 등을 연차보고서에 공시할 것을 권고
 - 특히 환경성과에 관해서는 에너지 소비량, 원자재 투입량 등 정량적인 환경효율성지표를 상세히 제시할 것을 권고
- 2003년 회계현대화 지침 발표

- 기업의 사업, 상황, 발전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환경, 종업원에 관한 문제를 포함하고, 사업에 관한 재무적 지표와 비재무적인 주요 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s)를 포함하도록 규정
- 내용면에서 회원국은 동 지침에 기초하여 국내법을 정비할 의무가 부과되어 2001년 권고보다 간단하나 회원국에게 강제력을 가져 영향력은 매우 큼

○ 특징

- 최소한의 사회적책임정보 공시사항을 강제화
- 2005년 1월부터 중규모 이상의 EU회사는 연차보고서에 사회적책임 정보를 공시할 의무 부담

나) 영국

○ 기업공시의 전개

- 2005년 3월 회사법 개정으로 영업과 재무상황 보고(OFR: Operatign and Financial Review) 강제공시
 - 목적: 회사의 현재 사업과 성과를 가져온 중요 요소와 장래사업과 성과에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중요 요소들을 경영자가 균형있게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음을 보여줌으로써 주주의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함
 - 내용: 필요한 범위에서 회사 종업원, 환경, 사회, 지역공동체에 관한 정보를 관련 주요성과지표(KPI)를 포함하여 공시하며 이는 감사대상이 됨

○ 상품공시의 전개

- 1999년 연금법, 이른바 SRI Disclosure Regulation이라 불리는 법의 개정
 - 연금수탁자로 하여금 투자원칙선언서(Statement of Investment Principles)에 투자결정과정(투자대상선정, 투자수익실현, 보유 등의 의사결정)에서 사회, 환경, 윤리적 이슈를 고려하였는지 여부 내지 정도에 대해 기재하도록 의무화함
 - 이 법의 개정으로 연기금 운용자들의 경우 환경, 윤리, 사회적 이슈(EES)를 보다 심도있게 고려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옴

○ 그 외

- CRE(Corporate Responsibility Exchange) 발족
- 지속가능성 정보의 확산을 위해 런던증권거래소가 정보교류기구를 설립(www.londonstockdxchange.com)
- 환경적, 사회적 성과에 관한 정보 접근과 분석이 가능하도록 웹사이트 제공

다) 프랑스

○ 기업공시의 전개

- 2001년 상법개정에 의해 사회책임투자정보 공시 의무화
 - 2001년 신경제규제법(Nouvelles Regulations Economiques)에 의해 상법 개정되었음 이는 EU 회계현대화 지침 제정 전으로 2001년 권고를 반영함

- 상장기업에 대해 사업활동의 환경,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보를 연차 보고서에 기재, 공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시행령에서 환경, 사회 책임정보를 여러 범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음
- 환경, 사회(지역공동체, 종업원 이슈)를 별개로 분리하여 공시할 것을 요구하는 등 시행령 상의 공시항목이 매우 상세함
 - 환경정보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경영 및 환경보호에 관해 상세하게 공시함
 - ① 물, 원자재, 에너지를 포함한 자원의 소비상황, 에너지재생,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노력을 하는 경우 그 노력, 환경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이용, 대기, 수질, 토지 오염배출, 소음
 - ② 생태학의 균형과 자원 환경의 손해예방장치 및 동물과 지구 생물보호를 위해 취한 조치
 - ③ 상장회사의 경우 환경보호를 위한 평가, 인증관련 활동
 - ④ 환경관련 법률준수를 위한 회사의 노력과 활동 및 사업활동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방하는데 소요된 지출
 - 종업원이슈
 - ① 인력의 채용과 활용(영구직과 임시근로자, 용역직, 초과근로 등으로 구분하여 공시) 상장기업은 반드시 인력감축에 대해 공시하여야 하며, 재고용노력을 포함한 고용안정계획에 대해서도 공시
 - ② 영구직원과 임시직원의 근로시간과 재직기간의 구성, 전직을 및 이를 유발하는 주된 요인
 - ③ 근로자에 대한 보수(이 경우 임금, 자기발전 및 복지비용, 여성과 남성의 평등으로 구분하여 기술)

- ④ 산업관계, 단체교섭상황, 건강 및 안전조건, 근로자 연수, 장애 근로자의 취업, 회사복지 및 후생제도, 하도급 업체의 중요성 등 기재
- 지역공동체 이슈
 - ① 고용 및 지역 발전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
 - ② 환경, 소비자단체, 이웃보호를 위한 각 단체와 사회적 통합, 교육 기관과의 연계활동
 - ③ 하도급 업체가 자사의 영업에 미치는 중요도 및 하도급 업체가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 준수에 대한 노력
 - ④ 해외 자회사의 활동으로 해외 지역발전과 인구에 미치는 영향 및 이에 대한 고려 시 채택한 방법론에 대한 논의사항

○ 상품공시⁴⁾

— 근로자 자본투자기금(capital investment fund, FCP)

- 프랑스 금융법 L. 214-39에서 FCPEs의 경우 ESG 이슈를 투자 및 의결권 행사 시 고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
- prospectus에 (a)ESG이슈를 분석하는데 있어 사용한 정확한 기준과 이들을 평가하는데 채택한 방법 및 (b)관리회사가 외부의 전문 평가기관을 이용하는지 여부, (c)ESG 이슈에 관한 실현사항을 연차보고서에 기술

4) 출처: A legal Framework for the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issue into institutional investment, UNEP(2005)

- 금융감독기구인 AMF는 투명성원칙에 따라 투자자에게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
 -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정의와 ESG의 고려사항의 선택
 - ESG 고려사항의 분석, 평가, 감독에 사용되는 방법과 절차
 - 외부감사인이 평가 시 따라야 할 윤리규정
 - OPCVM(뮤추얼펀드)의 수익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및 ESG의 영향
 - OPCVM(뮤추얼펀드)의 관리 시 ESG의 영향

라) 독일

○ 기업공시의 전개

- 상법개정으로 사회적책임투자정보 공시 제도화됨
 - 2005년 1월부터 EU 회계현대화 지침이 적용되며 대규모 상장기업의 경우 연차보고서에 EU 회계현대화 지침 반영 의무화
 - 사업의 전개와 상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환경과 종업원 이슈 포함하며 주요한 비재무정보의 성과지표를 포함
-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 내용이 간소하며,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정부가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등급화를 지원하고 있음

○ 상품공시의 전개

- 연금펀드

- 연금펀드가 윤리적인 투자를 할 것을 결정한 경우 반드시 그러한 결정에 관해 근로자에게 공시하도록 규정(Sec. 115 Par. 4 VAG)
- 보험 감독법 제 7차 개정으로 공시의무 확대
- 연금펀드는 연금이 설립되면 ESG 투자전략에 관해 서면으로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함
- 매년 수익자에게 ESG 이슈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

— 개인연금보험과 생명보험

- 개인연금보험과 생명보험의 경우 적립금 투자와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에게 다음 사상의 공시의무 부과
- ESG 이슈를 고려하였는지 여부와 그 정도
- 보험자의 연차보고서에 ESG 이슈에 대해 설명

2) 북미

가) 미국

○ 기업공시

- 환경정보만 기업에게 공시의무를 부과한 특징이 있음
-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제정으로 SEC는 규칙 제정 시 환경문제를 고려할 의무화 책임이 부과됨
- 규제체계
 - 증권법상 공시의무에 관한 일반규정

- 공시규칙 Regulation S-K(Item 101,103,303)
- Sarbanes-Oxley 법상의 내부통제 관련규정
- 일반회계기준

○ 상품공시

— 기관투자자의 사회책임 투자정보 고려 여부에 대한 공시의무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표 III-1> Regulation S-K와 Sarbanes-Oxley법 비교

	Regulation S-K		SOX
Item 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상황에 관한 설명 • 이외 환경법 준수 내지 위반에 따른 자본지출, 수익,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X의 영향으로 대표이사 인증 및 위반시형사처벌 등 강화된 내부통제제도가 환경관련 책임에도 적용 • 환경정보공시 또한 인증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경영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Item 1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와 자회사에 제기된 소송, 법적 절차가 제기되거나 진행 중인 경우 그 내용(다만 중대한 소송과 절차만 공시 요) • 자산의 10%초과하는 비용이 초래되는 소송과 제재금액이 \$100,000이상일 경우로 예상되는 경우 공시대상 		
Item 3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자의 토론과 분석결과 (MD&A)를 기재하도록 요구 • 환경법규 준수비용 및 장래 입법화될 법규의 중요한 영향에 대해 공시요구 	→	<p>환경정보와 관련하여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예상되는 공시항목임</p>

나) 캐나다

○ 기업공시

— 환경정보만 기업에게 공시의무를 부과함

○ 상품공시

— 투자관리자로 하여금 사회책임이슈 고려여부 및 정도를 공시하게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3) 아시아

가) 일본

○ 기업공시

— 기업공시법제에서 사회책임 투자정보 공시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 환경정보의 경우 환경관련법을 통해 공시 요구

- 2004년 환경배려촉진법(환경정보제공·촉진 등에 의한 특정사업자의 환경에 배려한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
- 적용대상은 독립행정법인과 국립대학법인이며, 일반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한해 환경보고서 작성 및 공시에 노력하라는 권고규정을 설치함

나) 호주

○ 기업공시

- 1999년 회사법에서 환경고시에 관한 규정을 신설(동법 제 299조 제 1항 f호 신설)
 - 호주연방 내지 주법에 의거하여 중대한 환경규제를 받는 회사의 경우 환경규제 관련 회사성과에 대해 상세히 공시할 의무를 부과하였음(이사보고서에 기술할 것이 요구됨)
- 2005년부터 상장회사의 경우 다음의 비재무적 정보공시의무화(회사법 제 299A조)
 - 연차보고서와 이사보고서에 회사의 운영, 재무상태, 미래 회사의 사업전략 및 전망에 대한 분석을 기재함
- 호주 증권거래소 상장규정에 상장회사의 사업과 활동상황 분석결과 공시를 요구함
 - 특별한 형식은 없고 Group of 100 Inc. Publication "Guide to the Review of Operations and Financial Condition"을 기초하여 작성 권고
 - 동 가이드에서는 “공시의 경우 이사는 사업의 단기와 장기적 분석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높여야한다. 이는 유용한 재무적 정보만이 아니라 비재무적 정보의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촉진될 수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음
 - 동 가이드에서는 사회·환경적 정보를 언급하고 있으며 아울러 재무정보와 비재무적 성과의 중요지표에 의한 분석과 토론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 경우 환경적 성과 측정을 포함한 지속가능성 조치를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상품공시

-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환경, 사회, 윤리적 이슈를 투자의사결정시 고려했는지 여부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회사법 제 1013D(1)(L))
 - 투자적 요소를 가진 금융상품을 판매, 권유하는 경우 상품설명서에 투자선택, 보유, 실현에 노동, 환경, 사회, 윤리적 이슈를 어느 정도 고려했는지에 관해 공시 의무화
 -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시할 것을 요구(회사법 7.9.14C)

4) 아프리카-남아프리카

○ 기업공시

- 요하네스 증권거래소 상장규정에서 사회책임정보 공시요구
 - 2002년 3월 26일 이사협회가 발표한 2002 King Report on Corporate Governance(King II로 알려져 있음)를 요하네스 증권거래소가 상장규정에 반영
- GRI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기준으로 공시할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임

<표 III-2> 각국의 SRI 관련 기업공시제도화 비교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한국	남아프리카
공시 강제	●	●	●	●	●	X	●	X	○
대상 기업	상장 기업	상장 기업	상장 기업				비상장 (환경) 상장 기업 (특정 비재무 정보)		상장 기업
근거 법령	회사법	상법	상법	증권법	증권법		회사법		거래소상장 규정
공시 범위	종업원, 환경, 사회, 지역	환경, 사회적 책임	환경, 종업원,	환경	환경		환경, 특정 비재무 정보		광범위한 사회적책임정보
공시 항목의 구체성	X	●	X	●	X		X		X

<표 III-3> 각국의 SRI 관련 상품공시제도화 비교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한국	남아프리카
상품 공시 의무화	의무화	의무화	의무화	X	X	X	의무화	X	X

나. 시사점

- 각국에서 기업공시제도를 통해 정부가 SRI를 지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공시제도의 정비를 통해 지원하는 점에서 간접적인 지원형태에 해당
 - 사회책임정보를 투자정보로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

- 구체적으로 공시 범위와 공시 규제수단의 선택은 각국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공통적으로 주주·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이 되는 투자정보로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많은 국가가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음
 - EU·EU회원국 : 환경, 사회적 이슈
 - 미국·캐나다·호주: 환경
 - 이러한 사회책임투자정보의 공시범위와 다른 규제채널을 이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해당 기업과 산업에만 국한·적용되는 특유의 법률 사용(예:환경법)
 - 거래소 상장규정을 활용하는 방법과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에 자발적인 가입하는 등의 자율 규율에 맡기는 방안(시장에 의한 압력을 통한 정보 공시 기대) 사용

- 이러한 사회책임투자정보의 공시 범위와 공시 규제수단에 대한 각국의 차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자본시장의 발달과 성숙정도
 - 규제 및 집행의 효율성 수준
 - 장기투자자의 자본시장 점유 비율
 - 영국이 미국에 비해 장기투자자의 비중이 높아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지원 수단을 고려할 때 미국과 정책적으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정치·경제적 요소(예: EU 회원국의 경우 EU 지침의 국내법화 의무 등)

4. 사회책임투자정보의 공시제도화 가능성과 제안

가. 사회책임투자정보 공시화 필요성과 가능성

- 글로벌 투자자의 존재
 - 정비필요성 측면
 - 글로벌 투자자의 경우 특정 주식보다 경제전반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 장기적인 성공을 기대할 수 있는 제도적 틀 구비여부에 큰 관심을 가짐
 - 정비가능성 측면

- 사회책임투자정보와 재무적 성과와의 상관성에 대한 인식 증대 및 실제 성과와의 적극적 상관성이 입증되고 있음

○ 연기금 등 장기 투자자의 역할과 비중 증대

— 정비필요성 측면

- 자본시장에서 연기금의 역할과 비중이 갈수록 커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장기적 투자자의 이익을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

— 정비가능성 측면

- 공시 강제규정이 없음에도 현재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발간이 지속적으로 증대

○ 외국과의 FTA 체결 등 기업 환경 변화

— 정비필요성 측면

- EU의 회계현대화지침이나 미국의 엄격한 환경공시규제 및 책임을 감안할 때 이들 지역에서 자금조달하거나 지역거대소에 상장을 고려하는 기업에게는 위험관리능력부재로 경쟁력 면에서 불리하게 작용

— 기관투자자와 같은 금융기관의 경우 신뢰·명성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들 정보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높아 질 것으로 예상

나. 제안

- 공시제도를 활용하여 SRI 투자자와 산업 및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지원이 필요

- 사회적책임투자정보의 기업공시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되 제도화 고려 시 사회적책임투자정보의 확대만이 능사가 아니며 양질의 정보를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적어도 협의의 사회적책임 투자정보에 대해서는 공시제도화가 조기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기업 간(내지 동일 기업 간) 비교가능성 · 정확성 · 신뢰성 확보
 - 공시미비 내지 부실공시에 대한 효율적 규제 · 집행수단과의 연계

- 최광의 · 광의의 사회적책임정보에 대해서는 투자정보로서 공시 강제화에 의하는 방법보다는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임
 - 해당기업과 산업에만 국한 · 적용되는 특유의 법률을 활용하거나 자율 규율 등 시장에 의한 압력을 통한 정보 공시방안을 모색

- 향후 공시범위, 공시상세내역, 공시수단, 진실 담보수단, 규제 · 집행 수단 등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에 관해서는 관련 정부 부처와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심도 깊게 연구하는 것이 필요함

IV. 사회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정보공개 방향

IV. 사회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정보공개 방향

- ESG 관련 정보는 기업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정보이며, 장기투자를 위한 필수적인 정보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세계적 흐름임
 - 무역장벽의 완화 등 세계화 흐름에 따라 자국 내에서만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의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음
 - 전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각종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ESG 측면의 위험관리가 반드시 필요함
 - 대표적인 사례로써 기후변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이슈를 꼽을 수 있음
 - 사회책임투자는 더 이상 단순한 사회적 변화를 위한 것이 아니며, 수탁자 책무를 위해 투자수익 극대화를 위한 기법임

-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정부, NGO, 노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ESG 관련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시장의 강력한 요구가 있을 때 정보공개가 활성화 될 수 있음
 - SRI 관점의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기업의 ESG 관련 정보는 시장에서의 적용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결코 걸림돌이 될 수 없음
 - 시장이 기업의 ESG정보를 성장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기업들 역시 자발적인 ESG 정보공개를 기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접근하게 될 것임

- 그러나 국내에서도 SRI 투자자들이 기업의 ESG 정보공개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으나 필요성만 강조할 뿐 구체적으로 기업의 정보공개 또는 보고서 발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은 아님
 - 실제로, 기업을 둘러싼 다수의 이해관계자 중 ESG 정보공개를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그룹은 투자자 그룹이 아니며, 오히려 NGOs 등의 단체에서 더욱 활발하게 ESG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음
- 사회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ESG 정보공개의 질적 성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 국내에서도 자발적으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 것은 명백하나 양적, 질적 면에서 아직 미흡한 점이 많으며 현재 시스템 하에서는 공개된 정보 또한 신뢰성에 의문을 가지는 경우도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은 투자자 그룹의 영향력 확대가 가장 중요한 시점임
 - 모든 투자자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SRI지수 개발과 관련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위해 외국의 지수개발 사례를 적극 검토해야 함
- 한편, 국내 사회책임투자 시장의 성숙도 등 현행 여건을 감안할 때 강제적인 ESG 정보공시 보다는 자발적 정보공시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 ESG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기업경영 패러다임인 지속가능경영은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가치 극대화와 기업가치 극대화가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함
- 사회책임투자가 활성화 되어있는 유럽 각국 등과 유사하게 ESG정보공시를 강제화하는 경우 지속가능경영의 본질 추구보다는 형식적인 보고서 작성으로 추가 비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
- 증권회사 등의 투자분석과정에 ESG이슈를 통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투자자들은 이러한 리서치 정보를 제공하도록 촉구해야 함
- 정부유관기관 등에서는 지속가능경영이 결국 모든 사회 구성원이 수혜자가 되는 경영방식임을 인식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ESG 정보공개를 위해 다양한 유인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부록 I . GRI 가이드라인(G3)

<부록 I> GRI G3 가이드라인

○ 지배구조, 책임 및 참여

- 조직의 지배구조
- 이사회 의장의 임원 겸직 여부
- 이사회가 일원화된 기업의 경우, 이사회에서 독립적인 또는 임원이 아닌 구성원 수
- 주주 및 직원이 이사회에 조언하거나 방향을 제시하는 메커니즘
- 이사회 구성원, 고위 관리자 및 임원에 대한 보상과 기업의 성과 간의 관계
- 이사회 내 이해관계상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세스
- 경제/환경/사회 주제에 대한 기업의 전략을 보조하기 위한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 및 전문성 기준을 결정하는 프로세스
- 경제/환경/사회 성과 및 활동과 관련하여 내부에서 마련한 미션, 핵심가치 진술문, 행동 강령 및 원칙
- 이사회가 경제/환경/사회 성과 파악 및 관리를 관장하는 절차
- 이사회 자체 성과를 평가하는 프로세스
- 해당 기업의 사전예방의 원칙 및 접근방법 채택 여부 및 방식에 대한 설명
- 경제/환경/사회 헌장, 원칙 등 가입하거나 지지하고 있는 외부 이니셔티브
- 협회 및 국가별/국제적 지원 기관의 멤버십

90 사회책임투자를 위한 기업 정보공개

- 참여한 이해관계자 그룹 목록
- 참여할 이해관계자 식별 및 선정 기준
- 참여 유형 및 이해관계자 그룹별 참여 빈도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 이해관계자를 통해 제기된 핵심 주제와 관심사, 이에 대한 대처 방식

○ 경제성과지표

- 경제성과
 - EC1(핵심):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의 창출과 배분(수익, 비용, 세금 등)
 - EC2(핵심): 기후변화의 재무적 영향과 사업 위험 및 기회
 - EC3(핵심): 연금 지원 범위
 - EC4(핵심): 정부 보조금 수혜 실적
- 시장지위
 - EC5(부가): 주요사업장의 현지 법정최저임금 대비 신입사원 임금 비율
 - EC6(핵심): 주요사업장의 현지 구매 정책, 관행 및 비율
 - EC7(핵심): 주요 사업장의 현지인 우선 채용 절차 및 현지 출신 고위 관리자 비율
- 간접경제효과
 - EC8(핵심): 공익을 우선한 인프라 투자 및 서비스 지원 활동과 효과

- EC9(부가): 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이해 및 설명

○ 환경성과지표

— 원료

- EN1(핵심): 중량 또는 부피 기준 원료 사용량
- EN2(핵심): 재생 원료 사용 비율

— 에너지

- EN3(핵심): 1차 에너지원별 직접 에너지 소비량
- EN4(핵심): 1차 에너지원별 간접 에너지 소비량
- EN5(부가): 절약 및 효율성 개선으로 절감한 에너지양
- EN6(부가): 에너지 효율적이거나 재생가능에너지 기반 제품 및 서비스 공급 노력 및 해당 사업을 통한 에너지 감축량
- EN7(부가): 간접 에너지 절약 사업 및 성과

— 용수

- EN8(핵심): 공급원별 총 취수량
- EN9(부가): 취수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 용수 공급원
- EN10(부가): 재사용 및 재활용된 용수 총량 및 비율

— 생물다양성

- EN11(핵심): 보호구역 및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구역 또는 주변지역에 소유, 관리하고 있는 토지의 위치 및 크기

- EN12(핵심): 보호구역 및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구역에서의 활동, 제품, 서비스로 인하여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 EN13(부가): 보호 또는 복원된 서식지
- EN14(부가): 생물다양성 관리 전략, 현행 조치 및 향후 계획
- EN15(부가): 사업 영향 지역 내에 서식하고 있는 IUCN 지정 멸종 위기종과 국가지정 멸종위기 종의 수 및 멸종 위험도

— 대기배출물

- EN16(핵심): 직/간접 온실가스 총 배출량
- EN17(핵심):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 EN18(부가):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성과
- EN19(핵심): 오존층 파괴 물질 배출량
- EN20(핵심): NO_x, SO_x, 및 기타 주요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 EN21(핵심): 최종 배출지별 총 폐수 배출량 및 수질
- EN22(핵심): 형태 및 처리방법별 폐기물 배출량
- EN23(핵심): 중대한 유해물질 유출 건수 및 유출량
- EN24(부가): 바젤협약 부속서 I, II, III, VIII에 규정된 폐기물의 운송/반입/반출/처리량 및 해외로 반출된 폐기물의 비율
- EN25(부가): 보고 조직의 폐수 배출로 인해 영향을 받는 수역 및 관련 서식지의 명칭, 규모, 보호 상태 및 생물 다양성 가치

— 제품 및 서비스

- EN26(핵심):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 영향 저감 활동과 성과
- EN27(핵심): 판매된 제품 및 관련 포장재의 재생 비율

— 법규 준수

- EN28(핵심): 환경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액 및 비금전적 제재 건수

— 운송

- EN29(부가): 제품 및 원자재 운송과 임직원 이동의 중대한 환경 영향

— 전체

- EN30(부가): 환경보호 지출 및 투자 총액

○ 노동여건 및 관행 지표

— 고용

- LA1(핵심): 고용 유형, 고용 계약 및 지역별 인력 현황
- LA2(핵심): 직원 이직 건수 및 비율(연령층, 성별 및 지역별)
- LA3(부가): 임시직 또는 시간제 직원에게는 제공하지 않고 상근직 직원에게만 제공하는 혜택(주사업장별)

— 노사관계

- LA4(핵심): 단체 교섭 적용 대상 직원 비율
- LA5(부가): 중요한 사업 변동 사항에 대한 최소 통보기간(단체 협약에 명시 여부 포함)

— 직장 보건 및 안전

- LA6(부가): 노사 공동 보건 안전 위원회가 대표하는 직원 비율
- LA7(핵심): 부상, 직업병, 손실 일수, 결근 및 업무 관련 재해 건수(지역별)
- LA8(핵심): 심각한 질병에 관해 직원 및 그 가족 그리고 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훈련, 예방 프로그램
- LA9(부가): 노동조합과의 정식 협약 대상인 보건 및 안전 사항

— 교육 및 훈련

- LA10(핵심): 직원 형태별 일인당 연평균 교육시간
- LA11(부가): 지속적인 고용과 퇴직직원 지원을 위한 직무 교육 및 평생 학습 프로그램
- LA12(부가): 정기 성과평가 및 경력 개발 심사 대상 직원의 비율

— 다양성 및 평등한 기회

- LA13(핵심): 이사회 및 직원의 구성 현황(성, 연령, 소수 계층 등 다양성 지표 기준)
- LA14(핵심): 직원 범주 별 남녀 직원 간 기본급 비율

○ 인권성과지표

— 투자 및 조달 관행

- HR1(핵심): 인권 보호 조항이 포함되거나 인권 심사를 통과한 주요 투자 협약 건수 및 비율
- HR2(핵심): 주요 공급업체 및 계약업체의 인권 심사 비율

- HR3(부가): 업무와 관련한 인권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직원 교육 시수(교육이수 직원 비율 포함)

— 차별 금지

- HR4(핵심): 총 파별 건수 및 관련 조치

—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

- HR5(핵심):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 업무분야 및 해당 권리의 보장조치

— 아동노동

- HR6(핵심): 아동 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 분야 및 아동 노동 근절을 위한 조치

— 강제노동

- HR7(부가): 강제 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 분야 및 강제 노동 근절을 위한 조치

— 보안관행

- HR8(부가): 업무와 관련한 인권 정책 및 절차 교육을 이수한 보안 담당자 비율

— 원주민권리

- HR9(부가): 원주민 권리 침해 건수 및 관련 조치

○ 사회성과지표

— 지역사회

- SO1(핵심): 업무 활동의 시작, 운영, 종료 단계에서 지역사회 영향을 평가/관리하는 프로그램의 특성, 범위 및 실효성

— 부패

- SO2(핵심): 부패 위험이 분석된 사업 단위의 수 및 비율
- SO3(핵심):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은 직원 비율
- SO4(핵심): 부패 사건에 대한 조치

— 공공정책

- SO5(핵심): 공공 정책에 대한 입장, 공공 정책 수립 및 로비 활동 참여
- SO6(부가): 정당, 정치인 및 관련 기관에 대한 국가별 현금/현물 기부 총액

— 경쟁저해행위

- SO7(부가): 부당 경쟁 행위 및 독점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건수 및 그 결과

— 법규준수

- SO8(핵심): 법률 및 규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및 비금전적 제재 건수

○ 제품책임성과지표

— 고객 건강 및 안전

- PR1(핵심): 개선을 목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의 건강 및 안전 영향을 평가한 라이프 사이클 상의 단계, 주요 제품 및 서비스의 해당 평가 실시 비율
- PR2(부가): 제품 및 서비스의 라이프 사이클 상에서 고객의 건강과 안전 영향 관련 규제 및 자발적 규칙 위반 건수

— 제품 및 서비스 라벨링

- PR3(핵심): 절차상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 정보 유형, 그러한 정보 요건에 해당되는 주요 제품 및 서비스의 비율
- PR4(부가): 제품/서비스 정보 및 라벨링과 관련된 규제 및 자발적 규칙 위반 건수
- PR5(부가): 고객만족도 평가 설문 결과 등 고객 만족 관련 활동

—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 PR6(핵심): 광고, 판촉, 스폰서십 등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규제, 표준 및 자발적 규칙 준수 프로그램
- PR7(부가): 광고, 판촉, 스폰서십 등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규제, 표준 및 자발적 규칙 위반 건수

— 고객 개인정보보호

- PR8(부가): 고객 개인 정보 보호 위반 및 고객 데이터 분실과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 건수

— 법규 준수

- PR9(핵심): 제품 및 서비스 공급에 관한 법률 및 규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액수

부록 II. BSR 가이드라인(산업자원부)

<부록 II> BSR 가이드라인(산업자원부)

○ 경제성과

— 경제

- 생성 및 분배된 경제적 가치 창출 및 분배
-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
- 조직의 정액연금제도 약정의 보상범위
- 주요 사업지역에서 인력 수급 및 조달
- 정부 수취보조금
- 비핵심사업 인프라구축
- 간접적 경제효과
- 브랜드가치
- 혁신경영 성과
- 창조경영 성과

○ 사회성과

— 지배구조 및 리스크관리

- 기업지배구조
- 사외이사 비율
- 이사회 구성현황
- 이사회 전문성을 나타내는 프로세스

- 이사회 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성과 관리 및 평가 프로세스
- 경제/사회/환경정책을 수립, 실행, 감독하는 조직구조
- 임원 보상과 조직의 경제/사회/환경적 성과와의 연계
- 이사회 활동내용 및 결정사항
- 기업 지배구조 관련 법규 준수 현황
- 기업에서 사용하는 경제/사회/환경 활동에 관련된 현장
- 기업의 사전예방원칙의 준수 여부
- 주주의 이사회 권고안 및 제안 제출 방법
- 조직 최상위기구의 이해충돌방지 프로세스

— 종업원

- 종업원 현황
- 종업원과 경영진의 구성현황
- 남녀 간 종업원 평균 임금
- 사업지역, 동종 산업과 비교한 임금 및 복리수준
- 고용창출률 및 이직률
- 평균근속연수
- 차별관행 예방정책 및 모니터링 결과
- 결사자유정책
- 아동노동금지 정책 및 모니터링 결과
- 결사자유정책
- 아동노동금지 정책 및 모니터링 결과

- 강제/강용 노동금지 정책 및 모니터링 결과
- 노동조합 관련 조직 개요
- 노동조합 종업원 가입 조항 및 가입 종업원 현황
- 기업의 운영 변화 시 종업원에 대한 정보제공, 협의 등에 대한 정책 및 프로세스
- 안전보건 위원회에 대한 설명
- 산업안전보건에 관련된 노사합의 사항
- 종업원에 관련된 국제 규범 및 표준 준수현황
- ILO협약 중 산업안전보건관리 항목에 대한 준수현황
-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정책과 프로그램
- 부상 및 질병발생 종업원 수와 결근율
- 종업원 복리후생제도
- 종업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 부당노동행위 제보 프로세스 및 운영현황
- 노동쟁의 현황
- 윤리경영 전담 부서, 투자 규모, 보고라인
- 윤리강령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및 지침 제공
- 종업원 교육훈련 평균 시간
- 종업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 성과 및 경력개발 관련 종업원 상담제도 운영
- 인권관련 교육을 받은 종업원의 비율

- 인권관련 교육을 받은 경비, 경호, 보안을 담당하는 종업원의 비율

— 협력사

- 협력업체의 특성 및 지속가능경영 이슈
- 협력업체 선정요인 중 사회적, 환경적 성과에 대한 고려
- 협력업체의 사회적, 환경적 성과에 대한 평가 프로세스
- 협력업체의 사회적, 환경적 성과에 대한 지원 및 감사 프로세스
- 협력업체 불만처리 제도 및 처리결과

— 소비자

- 제품 및 소비자의 특성 및 지속가능경영 이슈
- 소비자 관련 법규 준수 현황
- 공정경쟁, 독점금지와 관련된 정책 및 관리
- 제품 및 서비스 수명주기 동안 소비자 안전보건을 위한 정책 및 관리
- 제품정보 제공 관련 정책 및 관리
- 소비자의 주요 의견 및 반영결과
- 사회적, 환경적 이슈를 고려하여 혁신한 제품과 서비스
- 제품영향을 감소하기 위한 노력
- 소비자 만족도 조사
-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제품철회 사례 및 이유 설명
- 소비자 안전보건관련 법규위반 및 민원사례

- 제품정보 제공 관련 법규위반
- 마케팅 관련 법규, 표준, 자율규제정책의 실천을 위한 프로그램
- 마케팅 관련 법규 위반
- 소비자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불만사항

— 지역사회

- 활동하는 지역사회의 특성 및 지속가능경영 이슈
- 활동하는 지역사회의 요구사항을 처리하는 내부 정책, 절차
-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위한 사내 구성원 투입시간 및 투입비용
-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성과
- 뇌물 및 부패에 관련된 정책 및 관리
- 정치적 로비와 헌금에 관련된 정책 및 관리
- 정당 및 정당후원기관에 대한 기부금
- 사회성과와 관련한 수상실적
- 법규위반으로 인한 제재현황

○ 환경성과

— 환경정책 및 투자

- 환경관련 투자 및 비용
- 환경영향감소를 위한 정책
- 온실가스 저감 이니셔티브 및 성과
- 정량화된 환경목표 및 성과

-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 사용 현황 및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이니셔티브
- 오염지의 천연생태계와 종 보호 및 복구를 위한 목표, 프로그램

— 원료 및 에너지

- 물을 제외한 형태별 총 원자재 사용량
- 재활용된 폐자원의 사용비율
- 직접 에너지 사용량
- 간접 에너지 사용량
- 총 수자원 사용량
- 사업장 중 생물다양성이 있는 지역의 위치와 크기

— 환경영향

- 사업장의 활동으로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사례
- 온실가스 배출량
- 오존파괴물질 사용과 배출량
- NOx, SOx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형태별, 최종 처리방법별 폐기물의 양
- 수계 폐기량
- 화학물질, 기름, 연료누출로 주변 환경에 미친 영향
- 주요 제품과 서비스의 환경적 영향
- 제품 중 재생 가능한 제품 무게와 실제 재생무게의 비율
- 환경규정 위반 및 벌금

- 조직차원의 여행, 제품수명관리, 에너지 집약 자재의 사용 등 기타 간접에너지 관련
- 조직의 물 사용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취수원 및 취수원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 물의 재활용과 재사용
- 보호지 및 민감한 지역에 대한 활동과 운영의 영향
- 사업 활동에서 야기된 자연서식지와 변화 사례 및 보호되거나 복구된 서식지의 비율
- 사업 활동지역에서 서식하는 동식물 중 멸종위기 동식물 명단에 등록된 종의 수
- 보호지 내지 민감한 지역 내 현재 활동 중이거나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단위
-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CO₂, CH₄, N₂O, HFCs, PFCs, SF₆)
- 바젤협약 첨부 I, II, III, VIII 기준 위험 폐기물의 발생, 운송, 수입, 수출, 처리
- 물과 유거수에 의해 중대한 영향을 받은 취수원 및 생태계/서식지
- 물류과정 중 운송의 중대한 환경영향
- 환경관련 법규 준수 현황(지역별, 산업별)

부록 III. 사회책임투자연구회 참여회원 명단

<부록 III> 사회책임투자연구회 참여회원 명단

<u>성명</u>	<u>기관명</u>	<u>직책</u>
최도성 (연구회주관)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노희진 (연구회실무주관)	한국증권연구원	연구위원
임대웅 (연구회실무간사)	에코프론티어	실장
곽관훈	선문대학교	교수
김승길	미래에셋자산운용	이사
김영준	NHCA자산운용	본부장
김우식	SH자산운용	팀장
김형남	금융감독원	대전지원장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CEO
박주원	기업책임시민센터	팀장
박현섭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
박훤일	경희대학교	교수
안병훈	KAIST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안승광	에코프론티어	선임연구원
안춘엽	한국증권선물거래소	팀장
유상현	국민연금관리공단	차장
이경숙	머니투데이	기자
이기환	코스모투자자문	상무

<u>성명</u>	<u>기관명</u>	<u>직책</u>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팀장
이철영	Lee&Kim 투자자문	대표이사/회장
장영욱	기업책임시민센터	국장
장지인	중앙대학교	교수
전우종	에코프론티어	연구원
정수영	에코프론티어	팀장
정현	코스모투자자문	이사
채지식	포웰투자자문	부장
최재혁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이사
한병욱	산은자산운용	팀장
황은경	에코프론티어	연구원
황지환	NHCA자산운용	운용역